



## 주요 변경사항



##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p>다. 보호 연장 가능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li> <li>※ 아래의 사유에 한해 교차적용 가능</li> <li>-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의해 연장 보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li>- 각 연장사유에 의해 연장보호 중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교차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p>다. 보호 연장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li> <li>※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li> </ul>												
Ⅲ. 가정위탁 보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법조문</th> <th>법조문</th> <th>적용 안내</th> </tr> </thead> <tbody> <tr> <td>보호 기간 연장</td> <td>【법 제16조의3 제1항】</td> <td>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복무 기간</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td> </tr> <tr> <td>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td> <td>【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td> <td>「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복무 기간</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li> </ul>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 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 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 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복무 기간</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연장(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보호 기간 추가 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li>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li> </ul>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제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Ⅲ. 가정위탁 보호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복지부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Ⅲ. 가정위탁 보호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 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Ⅲ. 가정위탁 보호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Ⅲ. 가정위탁 보호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보호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 * 아동의 위탁가정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하여 사전·대면 심의 진행 * 동일 가정내 주양육자 변경은 변경될 주양육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조회 후 3년 경과 시 재조회 필요) 등 서류 취합, 부모교육 필수 이수, 사례회의 통해 결정	
Ⅲ. 가정위탁 보호	●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양육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사항에 따라 당사자 간 가정위탁보호 서약 진행</li> <li>* 최초 서약은 4자(친권자(보호자), 위탁 부모,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대면 서면 서약 원칙</li> </ul>	
Ⅲ. 가정위탁 보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아동 등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li> </ul>	
Ⅲ. 가정위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li> </ul>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li> <li>*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li> </ul>	
Ⅲ. 가정위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li> </ul>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li> <li>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안내하여 법률 지원 연계</li> </ul>	
Ⅲ. 가정위탁 보호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본문 참고)	
Ⅲ. 가정위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li> <li>-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li> <li>-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li> <li>-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li> <li>-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li> </ul>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p>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p>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p> <p>*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시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위탁아동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로 급여관리상황 모니터링 제외</p>	<p>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 가능</p>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p> <p>*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p>	
Ⅲ. 가정위탁 보호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 아동도 지원 대상	<삭제>	
Ⅲ. 가정위탁 보호	<p>라. 아동용품구입비</p> <p>● 지급방법 :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p>	<p>라. 아동용품구입비</p> <p>●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p>	
Ⅲ. 가정위탁 보호	<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p> <p>*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 :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거나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착취·유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Ⅲ. 가정위탁 보호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Ⅲ. 가정위탁 보호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Ⅲ. 가정위탁 보호	●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1명</th> <th>2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mixed;">일반 주택</td> <td>수도권</td> <td>12,000만원</td> <td>13,500만원</td> <td rowspan="3">•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td> </tr> <tr> <td>광역시</td> <td>8,000만원</td> <td>10,000만원</td> </tr> <tr> <td>그 밖의 지역</td> <td>6,000만원</td> <td>8,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Ⅲ. 가정위탁 보호	자. 자립정착금 ● 지원금액 : 아동 8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 자립정착금 ● 지원금액 : 아동 1,000만원 이상 지급 (지방이양)	자립정착금 권고기준 상향																		
	차. 자립수당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차. 자립수당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자립수당 인상																		
	카.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카.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 제3항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 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권고																			
Ⅲ. 가정위탁 보호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200명당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Ⅲ.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자격기준(표)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Ⅲ. 가정위탁 보호	<신설>	팀장 자격기준 추가(본문 참고)	
Ⅲ. 가정위탁 보호	● 보험료 : 1인당 68,500원 이내	● 보험료 : 1인당 68,500원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Ⅲ. 가정위탁 보호	5. 치료기관 선정 ※ 치료기관 선정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치료기관에 상담사의 범죄경력을 요청하여, 확인 권고	5. 치료기관 선정	
Ⅲ. 가정위탁 보호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경우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 동일 가정 내 위탁아동이 1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판단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3명 이내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부록-보호대상 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 서비스를 위한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사업	만 18세 보호종료 시까지	보호종료 시까지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문위탁가정 Pool」을 사전에 공유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li> <li>*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대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 결정</li> <li>*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li> </ul>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전문위탁가정 Pool」을 활용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위탁 후,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후 송부 가능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동을 보호가정에 인도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자체에서 지정한 임시 보호시설(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 보건소 등)로 이동,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보호가정으로 인도(양성인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li> </ul>	<삭제>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li> <li>※ 1개 보호가정에는 책정 시 최초 1회만 지원(위기아동 1인당 지급액이 아니며, 보호가정별 1회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li> <li>※ 이후 위기아동 연계 시마다 위기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li> </ul>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주거급여 월10~19만원	- 주거급여 월10~19만원 (단, 위기아동 가정보호, 일시위탁은 주거급여 대상 제외)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제출시기 : 분기말 기준 작성,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제출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지원사업	※ '22년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제출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전문위탁가정 정보를 취합하여 전국에 공유(매주)	●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국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매주)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하여 1:1 상시돌봄이 가능하여야 함	●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6. 장애인활동지원사(구;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지? ●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전문위탁가정 신청 가능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아동 보호비 미지원 - 장애아동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전문아동 보호비)에는 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6. 전문가정위탁 아동 주소지와 위탁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하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통보 * 일시보호(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는 전입하지 않으며, 중장기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처리 ** 가정위탁 보호와 관련한 재정지원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붙임3: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현황	<삭제>	
부록-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붙임4: 2022년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계획(보장원 주관)	<삭제>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은 저조한 실정이며,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li> <li>● 보호아동 대부분이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또한, 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보호체계별·지역별 면접교섭 서비스 격차가 존재함</li> <li>● 이에, 분리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저조로 가정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 저해 및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이에,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li> </ul>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li> <li>※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li> <li>※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li> <li>※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li> </ul>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p>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로 제출</li> <li>-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li> </ul>	<p>다. 각 시·도에서는 분기별 실적을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시기 : 3월, 6월, 9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li> </ul>																																																				
부록-보호아동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보호유형</th> <th colspan="2">아동현황</th> <th colspan="2">면접교섭 지원계획</th> <th colspan="2">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th> <th colspan="5">면접교섭 실시여부</th> </tr> <tr> <th rowspan="2">전체 아동 수</th> <th rowspan="2">면접 대상 아동 수</th> <th rowspan="2">면접 미대상 아동 수</th> <th rowspan="2">수립</th> <th rowspan="2">미수립</th> <th rowspan="2">수립</th> <th rowspan="2">미수립</th> <th rowspan="2">미실시</th> <th rowspan="2">비대면</th> <th colspan="5">대면</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th> <th>4회</th> <th>5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 대상 아동 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미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 대상 아동 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미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사업명	2022년		2023년										비고				
	기 보 호	사 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신 규 보 호	사 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 가정위탁 보호

1. 정 의	14
2. 목 적	14
3. 근 거	14
4. 연 혁	15
5. 가정위탁 대상 아동	15
6. 가정위탁 유형	20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21
8. 기관별 역할	41
9. 지원 내용	48
10.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53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53
12. 행정 사항	61



## 1. 정 의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 2. 목 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 3. 근 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3항,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2(부양능력 등)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이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4. 연 혁

- 1990년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2000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2000년~2002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 2003년 :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 2004. 7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2005. 7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 규정)
- 2006. 1월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2010. 1월 :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2012. 8월 : 「아동복지법」 개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가정 위탁보호 아동 자립지원 근거 규정)
- 2016. 3월 : 「아동복지법」 개정(가정위탁지원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
- 2020. 1월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19.7월 출범)으로 업무 이관
- 2020. 2월 :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연령별 차등화 및 금액 인상(월 20만원 이상→연령별 월 30~50만원 이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기준(신규 책정 시 1회 100만원) 신설,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기준 확대(월 40만원 이상→월 100만원 이상)
- 2020. 12월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령에서 가정위탁보호 유형 규정, '21.6.30.시행)
- 2021. 6월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부모교육 우선 이수 법정요건화, '21.6.30.시행)
- 2022. 6월 : 「아동복지법」 개정(보호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 전까지 보호 연장 가능)

## 5. 가정위탁 대상 아동

###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 나.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다. 보호 연장 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li> </ul>
보호기간 추가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명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li> </ul>
	【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li> <li>※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li>※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li>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 라. 보호연장가능아동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소년소녀가정을 가정 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 \* 소년소녀가정의 위탁가정 선정 시, 신청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할 것
-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경우,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 참고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입소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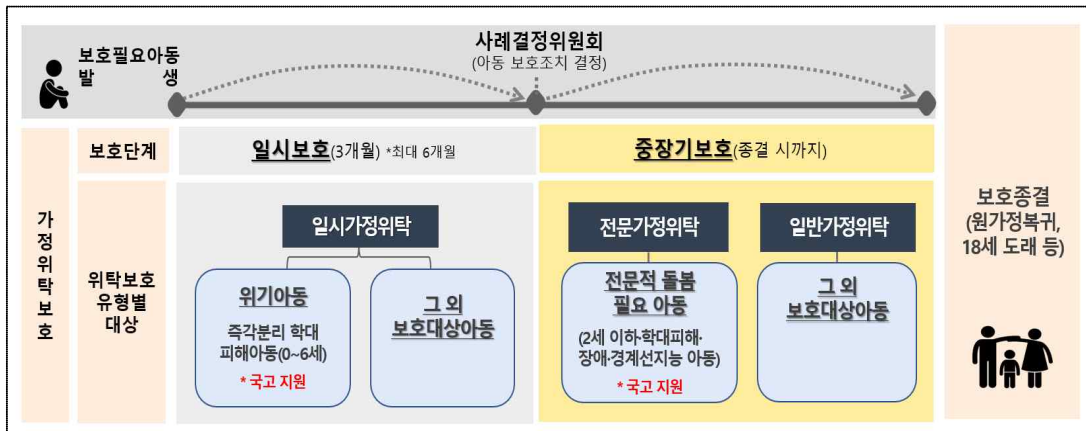
## 6. 가정위탁 유형

※ 가정위탁 유형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1.6.30.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문가정위탁 기준을, 대리양육·일반가정위탁·친인척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일시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 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가정 위탁보호

### 〈 가정위탁 유형 〉



## 7.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 가. 위탁가정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등)

#### (1)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일반위탁가정은 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반드시 특수상병기록을 포함) 등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
    - \* 위탁가정의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 및 검토

#### ※ 참고 : 위탁가정 선정 시 추가 검토사항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되,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위탁아동을 건장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양육 경험이 없는 자도 선정 가능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위탁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
- 위탁아동을 건장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가정으로 적합하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복지기관 또는 이웃주민의 추천 등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2) 전문가정위탁(추가 선정 기준)

- (1)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2)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기 (2)의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은 친인척 외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을 말함
    -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부모의 역량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문가정위탁부모 추천·연계 시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검사결과 참고 가능

(3) 일시가정위탁

- (1)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서류 검토와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긴급한 보호필요 사례에 대한 일시가정위탁 우선 보호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미조회 기간에 한해 조회



**나. 위탁가정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1) 일반 / 일시가정위탁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필요
  - ※ 선 책정 후 양성교육 이수토록 하는 편의적 가정위탁보호 책정 금지
-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1명 이상)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요
  -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교육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 등 집합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가능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의무 및 절차를 안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가정 교육 운영 관리(인원모집, 장소제공 협조 등)

(2) 전문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필요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최소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 전문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전문가정위탁 보수교육 이수 필요
  -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전문(일반)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 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책정 절차

### (1) 일반가정위탁(친인척)

\* 기존(~'21.6.29.)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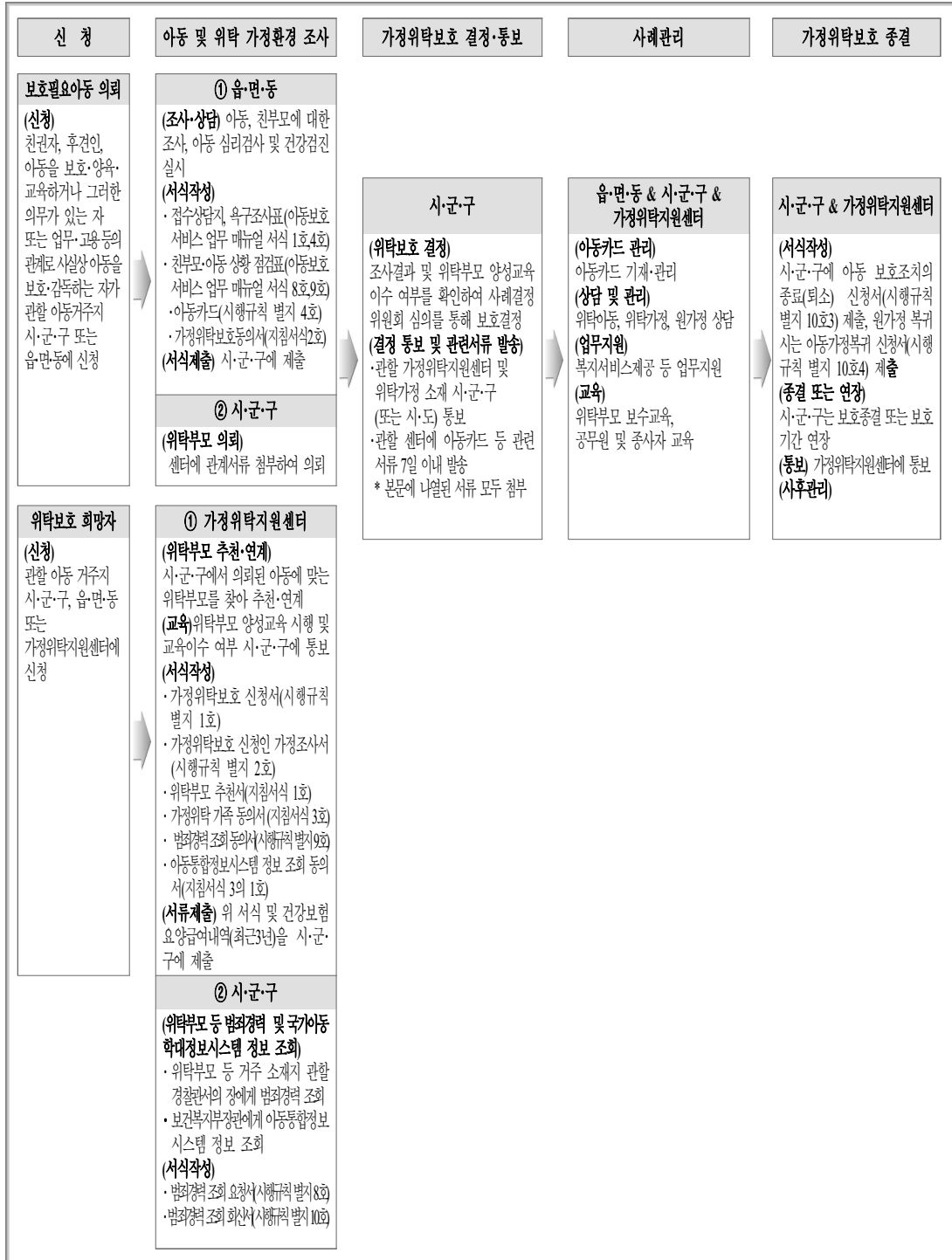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사정결과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욕구조사 및 친부모·아동 상황점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접수상담지), 4호(욕구조사표), 8·9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 중 아동과 친인척 관계인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
  - \* 아동의 위탁가정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은 가정위탁 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 제출하여 사전·대면 심의 진행
  - \* 동일 가정내 주양육자 변경은 변경될 주양육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조회 후 3년 경과 시 재조회 필요) 등 서류 취합, 부모교육 필수 이수, 사례회의 통해 결정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시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고 아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 아동의 위탁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될 가정의 가정조사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될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실시

- \* 가정위탁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친권자의 사망·소재불명으로 가정위탁 보호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재불명조사복명서(지침서식 2의 1호)로 대체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 단,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공범인 보호자의 의견은 듣지 아니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 **시·군·구**는 위탁 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근거하여 실시
  -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18세 이상의 구성원은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시행규칙 별지 8호)하고 이 때 당사자의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를 첨부
  -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신(시행규칙 별지 10호)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사자의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를 첨부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은 아동학대판단정보 등을 확인 및 검토 실시
- **시·군·구**는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 경찰관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 가정위탁보호 결정 전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위탁가정(신청인)과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서류 및 아래 관계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로 발송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사항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
  - \* 가정위탁 책임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시에는 전출 시·군·구에서 **7일** 이내에 전입 시·군·구 및 전입/전출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1,2,4호 등) 발송
  - \* 전입 시·군·구에서는 보험사가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담보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를 위탁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확인(※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에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기록
  - \*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위탁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관련 정보(학대 판정 유형, 판정일, 사례 관리기관, 보호조치 결정 등)를 상세히 기록
  -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접수상담지,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생략, 개별보호·관리 계획서는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는 보호 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 통보(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아동은 전입절차**를 진행
    - \* 관련서류 : 책임공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등
  -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변경) 사항 통보’(지침서식 5호)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 서식 2~3호)와 함께 **7일 이내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로 발송**
    -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상호 협조
- 18세 이후 가정위탁이 종결되는 형제·자매를 보호자로 위탁가정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을 지원해 줄 주변지원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
  - \* 18세 이후 종결된 자가 민법상 성년이 아니더라도 위탁부모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양육자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 18세 이후 연장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로 책정할 수 없음
  - \*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의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2) 일반(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절차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사정결과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욕구조사 및 친부모·아동 상황점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접수상담지), 4호(욕구조사표), 8·9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작성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보호대상아동과 가정을 조사 후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위탁아동 거주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과 관계된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가정(일반, 전문) 연계 의뢰
    - \* 가정위탁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친권자의 사망·소재불명으로 가정위탁보호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재불명조사복명서(지침서식 2의 1호)로 대체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함. 단,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거나 공범인 보호자의 의견은 듣지 아니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 보호대상아동이 2세 이하(36개월 미만),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인 경우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
    - \* 경계선지능아동은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
    - \*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3세(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 등으로 전환
    - \* 위 경우 외에도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정위탁 책정 가능
    -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은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은 함께 배치 원칙)  
(위탁아동 및 양육 중인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등을 제출
  - \*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센터가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등 위탁부모 사정절차를 진행
  -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시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제출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 의뢰된 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위탁부모 추천서(지침 서식 1호)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일반/전문위탁부모(예비/일시 위탁부모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근거하여 실시
  -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18세 이상의 구성원은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시행규칙 별지 8호)하고 이 때 당사자의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를 첨부
  -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회신(시행규칙 별지 10호)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당사자의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를 첨부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은 아동학대판단정보 등을 확인 및 검토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이 필요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
  -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아동복지법」 제15조제10항)
  - 신원확인 등의 조치 사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



- 위탁아동, 아동의 친부모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 수급자여부의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
- 시·군·구는 결격사유 조회 실시, 가정환경조사·양성교육 이수·자격증(전문위탁가정 해당) 등 기타 관계 서류확인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 최종 인정하고 선정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
  -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
-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 경찰관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육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위탁부모 추천서(지침 서식 1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 가정위탁보호 결정 전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위탁가정(신청인)과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 서식 2,3호 및 아래 관계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로 발송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육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사항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
  - \* 가정위탁 책정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시에는 전출 시·군·구에서 7일 이내에 전입 시·군·구 및 전입/전출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 \* 전입 시·군·구에서는 보험사가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담보 내용에 대한 안내자료를 위탁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확인(※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 가능)
  - \*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에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기록

- \*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위탁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관련 정보(학대 판정 유형, 판정일, 사례 관리기관, 보호조치 결정 등)를 상세히 기록
  - \*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 신청자 가정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접수상담지,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생략, 개별보호·관리 계획서는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아동 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사항에 따라 당사자 간 가정위탁보호 서약 진행
    - \* 최초 서약은 4자(친권자(보호자), 위탁부모,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면 서면 서약 원칙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 위탁아동 소재 시·군·구는 보호 결정된 사항을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 통보(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육보조금, 기초생활수급, 상해보험 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위탁아동은 전입절차**를 진행
      - \* 관련서류 : 책정공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등
    -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변경) 사항 통보(지침서식 5호)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 서식 2,3호)와 함께 **7일 이내에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
      -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소재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른 경우 위탁가정 조사 및 연계 등에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상호 협조

### (3) 일시가정위탁 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가정위탁 조치 가능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 보호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송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보호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인 위탁가정에 보호대상아동 배치 및 시·군·구에 보고
  - \* 일시가정위탁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일시위탁부모 선정 절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부모교육실시 및 일반위탁부모 선정 관련 제출 서식 작성 및 시·군·구 제출 → 시·군·구는 요청한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실시 → 시·군·구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 결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 시·군·구는 일시위탁가정을 사전에 발굴 및 선정하여 일시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시 즉각 연계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는 일시가정위탁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욕구조사 및 친부모·아동 상황 조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접수상담지), 4호(욕구조사표), 8·9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작성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학대피해아동인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 작성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개별보호·관리계획서) 작성
- **시·군·구**는 일반가정위탁 절차에 준하여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보호 등 보호조치 결정(일시가정위탁 종료)
  - ※ 유기아동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일시가정위탁 절차]



## 라. 위탁가정 사례관리(지자체(시·도/시·군·구/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카드 작성·비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아동발생 소재지 시·군·구는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위탁부모,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부는 시·군·구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이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례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상황을 기록
- 위탁가정 방문 등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아동복지법」 제15조의3,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서 확인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보고 및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5호 '양육상황 점검표' 작성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 양육상황 점검 시, 위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위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 등의 사항을 포함
    - \* 학업 등 타당한 사유 없이 위탁아동의 실거주지가 위탁가정의 주소지와 불일치하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점검
  - 시·군·구는 양육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계획을 재수립
-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 안내, 위탁가정 및 원가정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안내
  - 위탁부모(1명 이상)는 보수교육을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 위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양육상황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전문)위탁가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로 변경
    - \* 시·도(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 양성·보수 교육의 분기별 시행계획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지원 서비스 연계,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홍보물을 위탁가정에 배포하여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
- 위탁아동과 원가족 간 지속적·정기적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 지자체(시·군·구)는 위탁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을 수립 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및 제11조의6)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원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지자체(시·군·구)에 보고
  -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호 간에 아동학대 사례 관련 내용(신고 및 조사내용, 아동학대 판정내용, 학대 후유증)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조를 통해 사례관리 및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및 제1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사실상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친권상실·제한 신고 청구 요청, 지자체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 결정 및 서면 통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권제한·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안내하여 법률 지원 연계
    - \* 친권상실 등 청구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
- 위탁아동이 학업을 이유로 주소지 변경없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주말에 왕래하는 경우 또는 주소지 변경으로 전입/전출된 경우에도 가정위탁보호 유지
  -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 행정조치는 위탁가정의 주소지에서 처리
  - 관련 시·군·구 간,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협조를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사례관리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및 발급내역 관리(「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읍·면·동 및 시·군·구청장은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내역(지침서식 18호)을 기록·관리
  - 발급내역을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이 제공받고 있는 혜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정위탁보호 종결 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부정수혜 예방
    - \* 관련기관(부서)에는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부서, 공공요금 할인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포함
- 시·군·구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하여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안전교육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자 할 때 인원모집, 장소제공 등 협조

### 친권제한·상실 신고의 청구

####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신고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에게 친권남용, 아동학대 및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
- (청구요청)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
- (서면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요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시행규칙 별지 11호)으로 통보
- (이의제기) 서면통보 결과에 이의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제한 또는 상실의 신고 청구 가능

#### 친권행사의 제한 /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친권제한·상실 신고 청구 심의(「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안건)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종료(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및 친권상실 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지방교육청·노동관서의 아동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공무원, 변호사·의사로서 아동분야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아동분야 담당 사람,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를 전공하여 아동분야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그 밖에 아동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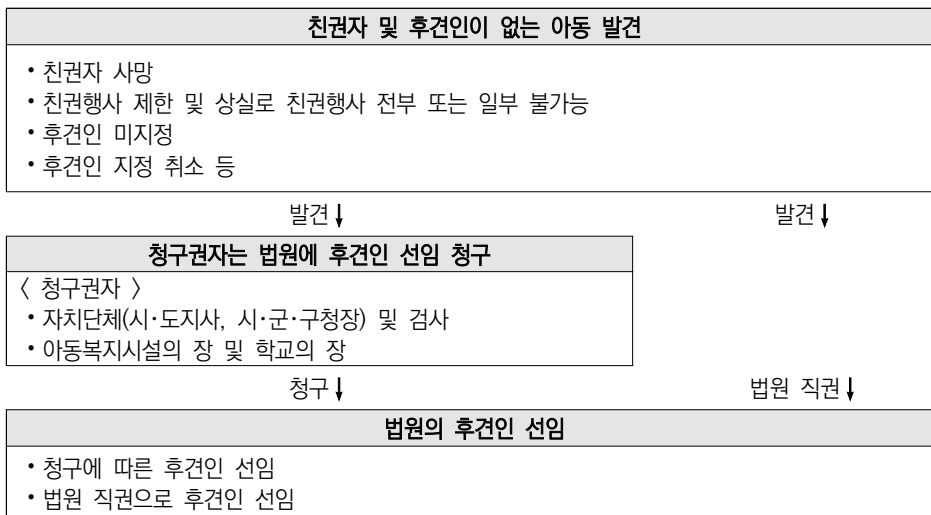
☞ 가정위탁 관련 전문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가 위원으로 필수 참여하도록 조치

미성년후견인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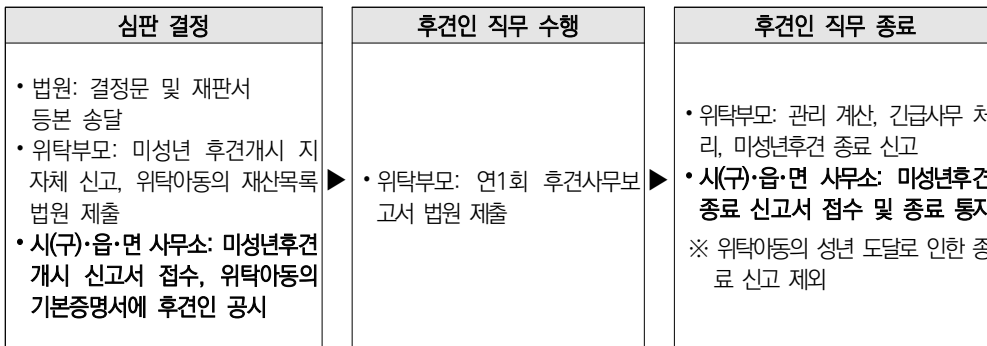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 (후견선임 심판청구) 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
  -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이 청구
  - \* 아동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친권상실/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병합하여 청구 가능
- (임시 후견인) 법원은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아동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으로 하여금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 가능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절차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 마. 가정위탁보호 종결

### (1) 원가정 복귀

-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원가정 복귀)하려는 경우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양육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22)를 제출(「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 아동 가정복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17)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
  - 원가정 복귀 시 사례관리 담당자(시·군·구 및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귀가 적합성 파악
    - \* 복귀 전, 위탁아동, 원가정, 위탁가정, 사례관리 담당자 간 만남 필요
  -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부모와 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가정 복귀 의견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9)를 요청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 복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제출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원가정 복귀 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지침서식 5의1호) 확보
  - 단, **아동학대**로 인해 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귀가 조치할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환경조사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1)를 제출받아 보호조치 종결 여부 판단
    -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원가정복귀 점검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가정환경조사로 같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의 귀가조치 여부 결정

### (2) 보호종료(18세 도래, 보호조치 변경)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지침서식 5의1호) 확보
  - \* 학대피해아동이 아닌 아동의 보호연장의 경우 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을 관찰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를 제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 형제·자매가 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다가, 형제·자매 중 1인이 18세 이상 등의 사유로 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되더라도 동생(나머지 형제·자매)은 계속해서 가정위탁보호 유지
  - \* 가정위탁보호아동은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의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
- 아동 단독 전출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전출 시·군·구에서는 전입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아동의 보호상태 확인 후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여부를 결정

(3) 유의사항

-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이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가정위탁보호자,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 \* 가정위탁 보호종료 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지침서식 18호)을 확인하여 위탁가정이 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혜택의 부정수혜방지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종료 사실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 \* 관련기관(부서)에는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부서, 공공요금 할인기관(한국에너지공단) 등 포함

바.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 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 연장 가능
-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 보호기간 추가연장: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li> <li>※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li> <li>※ 보호 일시종지 : 군 북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사회복지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출·퇴근으로 '생활비' 등 비용 발생시)</li> </ul> </li> </ul>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추가연장 (만 25세 이후)	【법 제16조의3 제3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li> <li>※ 보호 일시중지 :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li> <li>-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명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li> <li>-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보호기간 연장</li> <li>-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li> </ul> </li> </ul>
	【법 제16조의3 제3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li> <li>※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li>※ 장애·질병 등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li>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세 미만까지 지원</li> </ul>

● 보호기간 연장 절차

-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는 18세 도달(고등학교 졸업) 시 위탁아동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절차, 보호 일시중지사유 발생·소멸 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의무를 안내(1월 중)
  - \* 시·군·구(또는 읍·면·동)는 원활한 안내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중인 자(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지침 서식4호)를 제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연장 기간에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 가정위탁 보호연장 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연장 보호기간 동안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지속
- 이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실시

## 8. 기관별 역할

### 가. 시·도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에서는 지역면적 및 인구수에 따른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조치 시행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신분증 발급
- 가정위탁아동 지원 예산 확보·지원
- 가정위탁보호사업 지도 관리
- 가정위탁 관련 통계 관리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에 대한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안내와 가정위탁제도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에 대한 지원

### 나. 시·군·구

가정위탁 절차		시·군·구 역할
보호대상아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 아동 발생 시 상담·지도 후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li> </ul>
가정위탁 보호신청	일반 (친인척 외), 전문, 일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에서 제출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연계를 의뢰</li> </ul>
	위탁부모 자격심의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부모 자격심의를 통한 위탁가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는 결격사유 조회 실시, 가정환경조사, 양성교육 이수, 자격증(전문위탁 가정 해당) 등 기타 관계서류 확인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자격 최종 확인하고 선정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li> </ul> </li> <li>• 위탁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부모 거주 소재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li> <li>*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li> <li>*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li> <li>* 일반·전문·일시 위탁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작성 가능</li> </ul> </li> </ul>

가정위탁 절차		시·군·구 역할
가정위탁 보호결정	일반위탁 (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li> <li>*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li> <li>* 관할 경찰관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li> <li>* 보건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li> <li>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서류 및 관련서류는 7일 이내에 발송</li> </ul>
	일반(친인척 외), 전문, 일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결정</li> <li>* 읍·면·동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li> <li>* 센터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 범죄경력 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li> <li>* 관할 경찰관서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li> <li>* 보건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li> <li>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행규칙 별지 1,2,4호, 지침서식 2,3호 서류 및 관련서류는 7일 이내에 발송</li> </ul>
	수급자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 소관</li> <li>-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li> <li>- 수급자 책정 전에 위탁가정으로 전입하여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책정가능</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처리</li> <li>*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li> </ul>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카드를 작성·비치</li> <li>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 방문 및 아동양육상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조</li> <li>위탁가정 방문 등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책정 후 1개월 이내, 분기별 1회 이상)</li> <li>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 안내, 위탁가정 및 원가정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안내</li> <li>- 상해보험 지원, 전세주택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위탁가정 지원 서비스 연계,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홍보물 배포</li> </ul>	

가정위탁 절차	시·군·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호 간에 아동학대 사례 관련 내용(신고 및 조사내용, 아동학대 판정내용, 학대 후유증)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조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수행</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위탁아동의 친부모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사실상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친권상실·제한 신고 청구 요청, 지자체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 결정 및 서면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li> </ul> </li> <li>• 시·군·구청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보호자(친인척)가 고령인 경우 보호자가 더 이상 아동을 양육·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아동의 후속 보호조치(일반위탁(친인척 외), 그룹홈 등)를 마련</li> <li>• 시·군·구청장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및 위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 보호확인서(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의2)를 발급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지침서식 18호)</li> </ul>
가정위탁보호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정 복귀) 보호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아동 가정복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의4)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아동가정복귀신청서(시행규칙 별지10호의4)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17)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 해결여부 확인</li> <li>-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부모와 아동 간의 지속적인 만남 여부 등을 담은 ‘가정 복귀 의견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19)를 요청</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자가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할 의사를 밝힐 경우 ‘양육 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22)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li> <li>-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환경조사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61)를 제출받아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 여부 판단</li> <li>-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귀가조치 여부 결정</li> </ul> </li> <li>• (보호연령 초과)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li> <li>• (보호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가능</li> </ul>

시·군·구와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협조사항

□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가정위탁보호 결정

- **(관련서류 송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송부

\*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접수상담지,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생략, 개별보호·관리계획서는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시·군·구청장은 위탁부모에게 부모교육 이수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에 협조해야함을 안내하고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부모교육 및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구청장은 일반위탁부모(친인척 외)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아동통합정보 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를 위탁가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작성 가능

□ 가정위탁보호 변경통보

- **(변경)**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정, 해지 결과 및 주소지 이전 사항 등 가정위탁보호 변경 사항을 가정위탁보호(변경)사항 통보(지침서식 5호)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및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발송

-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시에는 전출 시·군·구에서 7일 이내에 전입 시·군·구 및 전입/전출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 가정위탁보호 변경 관련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사전·대면 심의:** 위탁가정 변경(가정위탁 → 가정위탁)
- **사후·서면 심의 가능:** 동일가정의 위탁유형 변경(일반 → 전문가정위탁)
- \* 위탁가정 내 주 양육자 변경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부모 자격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례회의의 통해 결정

□ 가정위탁보호 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실시

-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및 위탁아동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의2)를 발급

※ 읍·면·동에서도 가정위탁보호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의2) 발급 가능

-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의4)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센터장의 의견청취 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정 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서식17)를 활용하여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귀가조치 여부 결정(「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 정보 공유

-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 보호결정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중 원가정의 연락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의 정보(현거주지, 연락처 등) 요청 시 협조(※ 단,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위탁아동 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공

- 가정위탁보호 책정 시 사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강화(부적합사례 방지)

□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홍보 및 가정위탁가정 발굴 적극 지원

다. 읍·면·동

가정위탁 절차		읍·면·동 역할
보호대상아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li> </ul>
가정위탁 보호신청	일반위탁 (친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 가능</li> </ul> </li> <li>조사 실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육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서식 3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li> </ul> </li> <li>시·군·구에 가정위탁보호 신청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li> </ul>
	일반 (친인척 외), 전문, 일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 대한 조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 가능</li> </ul> </li> <li>조사 실시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육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9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 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 신청자 제출)</li> </ul> </li> <li>시·군·구에 가정위탁보호 신청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li> </ul>
가정위탁보호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li> </ul>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위탁가정, 위탁아동, 원가정 상담)</li> <li>가정위탁보호 중 아동의 친부모가 주민등록 말소 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보호 연장 및 위탁가정 변경 신청</li> <li>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의무)교육 이수 안내와 모집 및 CDA 계좌신청, 보건복지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및 서비스 연계하며 위탁가정 관리 업무 협조</li> <li>아동의 군입대 등으로 위탁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수급비 및 양육보조금 시·군·구에 지원 중지 요청</li> <li>읍·면·동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및 위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0호의2)를 발급하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지침서식 18호)</li> </ul>

라.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법」 제4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

**마.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48조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기업·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 가정위탁보호 절차(구체적 내용은 본문 참고) ]

구분	읍·면·동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보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시 접수 상담</li> <li>-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li> <li>- 기초생활수급 신청</li> <li>-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시 접수 상담</li> <li>- 가정위탁보호의 신청·접수·상담</li> <li>- 위탁가정 범죄경력조회</li> <li>-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연계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 아동 상담</li> <li>- 위탁부모 발굴 및 양성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시·군·구 통보</li> </ul>
가정위탁 보호결정	<p>&lt; 일반(친인척 외)전문위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li> </ul> <p>&lt; 일반위탁(친인척)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 보호 결정 (사례결정위원회)</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책정 통보, 관련서류 발송</li> <li>- 기초생활수급 책정</li> </ul>	<p>&lt; 일반(친인척 외)전문위탁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가정을 상담하여 적합한 가정 연계 후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 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위탁부모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li> </ul>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li> <li>· 위탁보호 연장 및 위탁가정 변경 신청</li> <li>· 부모교육 이수 안내</li> <li>· 연장보호 일시중지 시 재정지원 중단 요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li> <li>·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방문, 적응·양육상황 점검 등</li> <li>· 후속 보호조치 마련</li> <li>· 심리치료 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등 업무지원</li> <li>·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사례관리</li> <li>· 위탁부모 보수교육</li> <li>· 위탁가정 지원서비스 연계,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홍보물 배포 등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li> </ul>
가정위탁 보호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연장 승인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종결</li> <li>· 귀가조치(원가정 복귀 등)</li> <li>· 가정위탁 종결(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li> <li>- 보호연장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치 사정</li> <li>- 아동 보호조치의 종결(퇴소) 신청서 제출 (원가정 복귀 시에는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제출)</li> <li>- 사후 관리</li> </ul>

## 9. 지원 내용

### 가.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 학업 등 이유로 주소지 분리된 경우 포함
  -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가정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에서 수행
  - \*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 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90일 이상 체류 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처리 시 중지사유 필수 입력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재개설 포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나.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 전문위탁부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계좌 및 지급일 :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다. 일시위탁보호비

- 지원대상 : 일시위탁부모
- 지원내용 : 일 3만원 이상 지급(지방이양) 권고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일시가정위탁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일시위탁부모 계좌로 지급
  -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국비 지원)를 지급하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라. 아동용품구입비

- 지원대상 : 신규 책정 위탁가정
- 지원내용 :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 사용용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결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해 가정위탁아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동시에 책정
  -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가정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최초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군·구에서 수행

- \* 단, 일시위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로 결정되면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보아 지원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
-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해외 출입국(90일 이상 체류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특례 : 금융재산 회신 이전이라도 공적자료만으로 대상자 책정 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 조치
- 친부모 사망 후 위탁아동의 상속된 재산(사망보험금 등의 동산,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 처분이 곤란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재산 특례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제외 검토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예산은 추경 등으로 확보 조치

## 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붙임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참고하여 위탁 책정 시 안내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 일시위탁보호, 연장보호아동 포함
- 보험료 :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사. 심리검사·치료비

※ 붙임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업무처리 안내' 참고

- 지원내역 : 위탁아동(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일시보호아동, 연장보호아동 포함)의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지원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아. 위탁가정 전세주택(국토교통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참고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 (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자 아동
  -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지원 참고
- 지원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가정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전세주택 지원 대상 추천
  - \* 지원대상 전세주택이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임대주택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함.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 \* 지원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난 경우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 가구당 지원한도액(2022년 주택도시금융운용계획)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자. 자립정착금(「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21.12.21. 공포, 6.22. 시행)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지방이양)
- 지원절차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로 계좌로 입금
  -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반드시 지급
  -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 단,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 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 고려해 분할 지급(권고)
  - ※ 사후관리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자립정착금 분야(14~15쪽) 참조

### 차.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21.12.21. 공포, 6.22. 시행)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 지원금액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이체) 원칙
-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

### 카. 대학진학자금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권고
  - ※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권고

## 10.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 가. 후원자 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아동 관련 전문가,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지정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방법 : 지역 사회 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 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를 후원자로 지정

### 나. 결연기관과 협조 강화

- 결연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위탁보호 아동 지원,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 활성화
- 시·군·구청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결정·해지 시 결연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결연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1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 목적
  - 시·도 및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 지원 대상
  -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22년 12월 현재 18개소, 각 시·도 1개소, 경기 및 전남 2개소)
- 인력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배치

- 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
  - \* 상담원은 위탁아동 400명 초과시 1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인 추가 배치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배치는 '18.3.23부터 적용)
- 인건비 지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 확보 및 지원 필요
  - \* 임상심리치료인력 급여는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과장급 직위를 적용 가능
  -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 \*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호봉획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을 준용하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의 경우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행(2016.9.23.)전에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으로 환산 (유사 경력 80%로 적용하지 않음)
  - \*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기준)종사자에 준하여 종사자 수당 지급 권고

● 운영비 지원

-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자체사업 운영시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가능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아동복지법」 제48조)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가능
  -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 부담 가능

[ 전국 위탁아동 담당 규모별 시·군·구 개수 분포 ]

개별 시·군·구 담당아동수	'20.11월말 기준			
	50명 이하	51명-100명	101명-150명	151명 이상
시·군·구 개수	181개 지역	58개 지역	10개 지역	1개 지역

- 한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위탁아동수가 100명이 넘는 시·군·구가 11개에 달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관할 면적이 넓어 1개 센터가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어 가정위탁지원센터(또는 분소) 추가 설치 필요



## 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관리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별표 1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기준”(제47조 관련) 참고

### ● 설치기준

- 사무실 : 가정위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 구비
-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며, 녹취기, 무인카메라, 일방경(一方鏡) 등의 장비 구비
- 심리검사·치료실(가정위탁지원센터만 해당) :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구비
- 교육실 : 66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구비
- 그 외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 구비

### ● 직원배치기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 ※ 다만,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 15세 이상의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 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추가 배치
-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위탁아동 수와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상담원 수 조절 가능

### ● 운영기준

- 관리규정
  - 센터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시행. 다만,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이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되,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 장부 등의 비치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센터(법인)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센터 운영일지
-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친부모에 대한 조사·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자립지원계획 등)
- 가정위탁보호조치 아동 및 귀가 아동의 명단 및 관련 서류(사후관리계획 등)

- 운영원칙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탁아동 및 원가족(原家族)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 아동의 이익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시 아동에 대한 계획 및 아동 배치 후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평가 실시
- 친부모와 아동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계획 수립
-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돕기 위하여 친부모와 정기적인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
- 시·도(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의뢰가정 및 위탁 가정은 상호 협력

**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유형	자격기준
가정위탁 지원 센터의 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 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형	자격기준
	<p>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진료 경력자</p> <p>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7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필요</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에 필수적 참여(센터는 소요예산 확보하여 지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 교과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의 이해(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li> <li>- 아동복지실천기술론(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아동복지 실천기술론)</li> <l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li> <li>- 위탁아동과 부모(위탁아동양육프로그램, 위탁부모 및 친부모교육,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li> <li>- 가정위탁사업과 상담(아동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 가정위탁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가정위탁과 지역자원연계(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지역자원 연계사례)</li> </ul>
<p>팀장</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상담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 면제 가능</p> <p>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p>

유형	자격기준
	<p>나.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p> <p>※ 상담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7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필요</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에 필수적 참여(센터는 소요예산 확보하여 지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 교과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의 이해(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li> <li>- 아동복지실천기술론(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아동복지 실천기술론)</li> <l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li> <li>- 위탁아동과 부모(위탁아동양육프로그램, 위탁부모 및 친부모교육,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li> <li>- 가정위탁사업과 상담(아동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 가정위탁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가정위탁과 지역자원연계(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지역자원 연계사례)</li> </ul>
<p>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p>	<p>•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p>
<p>자립지원 전담요원</p>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라.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을 포함)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에 대한 75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필요</p> <p>※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가정위탁보호 실무과정 및 상담원 교육에 필수적 참여(센터는 소요예산 확보하여 지원)</p> <p>※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교육과정 교과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의 이해(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li> <li>- 아동복지실천기술론(아동상담심리학의 이해, 아동복지 실천기술론)</li> <l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가정위탁 관련 법률의 이해)</li> <li>- 위탁아동과 부모(위탁아동양육프로그램, 위탁부모 및 친부모교육,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li> <li>- 가정위탁사업과 상담(아동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위탁부모 유형별 특성과 상담, 가정위탁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가정위탁과 지역자원연계(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 지역자원 연계사례)</li> </ul>

● 종사자 역할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위탁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위탁부모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친부모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심리 치료 기관 연계 및 관리
- 집단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치료지원현황 및 성과관리 등
- 심리치료 관련 사례관리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요건 기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중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자립지원전담요원

- 만 15세 이상 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및 평가
-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탁아동 자립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 전산시스템(DB)의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현황관리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체계 마련
- 자립영역 단계별 위탁부모 교육
- 자립아동 사후관리
-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신청 지원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신분증 관련 사항**

- 각 시·도지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1201호)의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하여 가정위탁 지원센터 직원신분증 발급

※ 기재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함

● 기재사항 제시

- 앞쪽의 기관명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뒤쪽

- 소 속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발급기관장 명의 : ○○시·도지사

## 마.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설치대상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설치주체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사항임
- 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장(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
- 위촉방법 :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준용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시행규칙 제24조 3항)
  -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
- 위원의 임기 : 3년(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행정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이 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참조

## 12. 행정 사항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익월 15일까지 해당월의 가정위탁보호 실적 및 사례현황 자료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등록
  - \* 시·군·구(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책정·종료·연장 공문 누락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문서 24([open.gdoc.go.kr](http://open.gdoc.go.kr))를 통한 공문처리 가능
  - ※ 시·군·구는 위탁아동에게 변경사항 발생 시(가정위탁책정, 종결, 위탁가정 또는 위탁아동 전출/전입 등) 해당내용을 7일 이내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해당월 실적에 누락되지 않도록 등록
  - ※ 기타 관련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매뉴얼」 참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지침서식 7호)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군·구는 관할 지역 내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시·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 현황(지침서식 6호) 및 지원내역(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생계비,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등의 지원인원수, 자금원별 지원금액, 지급내역)을 반기별로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가정위탁 상담문의 1577-1406

기관명	주 소	연 락 처	홈페이지	운영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6층	전화: 02)6454-8500	www.ncrc.or.kr	-
서울 가정위탁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3층	전화: 02)325-9080 팩스: 02)325-2664	www.seoul-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전화: 051)758-8801 팩스: 051)752-8810	www.busan.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대구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1, 1층	전화: 053)656-2510 팩스: 053)626-2510	dgfc.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천 가정위탁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전화: 032)866-1226 팩스: 032)504-1226	www.ic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3층	전화: 062)351-1206 팩스: 062)261-2141	www.gjw.or.kr/foste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가정위탁 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4호	전화: 042)242-5240 팩스: 042)242-5280	www.djfoster.or.kr	(사)한국수양 부모협회
울산 가정위탁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전화: 052)286-1548 팩스: 052)286-4675	ulsan.goodneighbors.kr	굿네이버스
경기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14번길 9 서린프라자 7층	전화: 031)234-3980 팩스: 031)234-2353	www.gg-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 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8 4층	전화: 031)821-9117 팩스: 031)840-2828	www.kgfoster.or.kr	대한사회복지회
강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79번길 27, 2층	전화: 033)255-1406 팩스: 033)257-1407	www.fostercare-gangwon.or.kr	YMCA
충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전화: 043)250-1226 팩스: 043)238-7757	cbfc.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충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10길 8 희망빌딩 4층	전화: 041)577-1226 팩스: 070)8891-1226	www.fosterservice.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청목빌딩 6층	전화: 063)288-7770 팩스: 063)288-7780	jbfc.sc.or.kr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전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전화: 061)279-1225 팩스: 061)245-1524	www.jnfoster.org	공생복지재단
전남 동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전화: 061)744-1964 팩스: 061)744-1969	www.jnefoster.org/jnbd	순천성신원
경북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전화: 054)705-3600 팩스: 054)705-3500	www.gbfooster.or.kr	(사)한국아동 복지협회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봉곡동) 한마음타워 5층	전화: 055)237-1226 팩스: 055)716-0080	www.knfoster.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 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전화: 064)747-3273 팩스: 064)747-3272	www.jeju-foster.or.kr	(사)제주 상담센터



**붙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

**I. 개 요**

1. 목 적

-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의 보조)

3. 대 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II. 상해보험의 내용**

< 상해보험의 주요 담보원칙 >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1. 보험의 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위로금
- 얼굴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질환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 2.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 ● 후유장해 보험금

-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 입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 ● 통원 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 (최고 180일까지)

● **치아 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위로금을 지급(90일 한도)

●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 **얼굴 성형**

- 피보험자가 얼굴표면에 1cm 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필요로 한 때에 의료실비 및 성형수술실비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각 시·도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담보내용을 조정·확대 가능

●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식중독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

**III. 업무처리요령**

1.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 2022. 3. 1 ~ 2023. 2월 말(28일 또는 29일)**

● **보험내용 :**

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1인),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위로금, 얼굴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정신과 질환,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보험료 : 1인당 68,500원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

- **보험개시일 : 2022. 3. 1부터**

## 2. 보험사 선정

### (가) 보험사 선정기준

- 선정원칙 : 1인당 약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중 아래에 제시한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외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 보험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료를 총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1인당 보험료가 평균 68,500원을 초과하여 유찰이 예상될 때에는 입찰 공고 전에<별첨: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담보 조정 순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담보 사항을 조정하여 공고 가능
-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 체결(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 시도는 입찰 공고시 입찰 보험사가 동일한 자료로 보험료 산출을 할 수 있도록 위탁아동(비실명)의 성별 및 연령구성을 공개
-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 보험사 선정 공고 시 <지침서식 제8호 서식>에 따라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의 부양자 1인의 인적사항 제공

##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 ]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10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50천원/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천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얼굴성형	2,000천원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식중독위로금	2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

## (나) 제안 요구 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안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 3. 보험계약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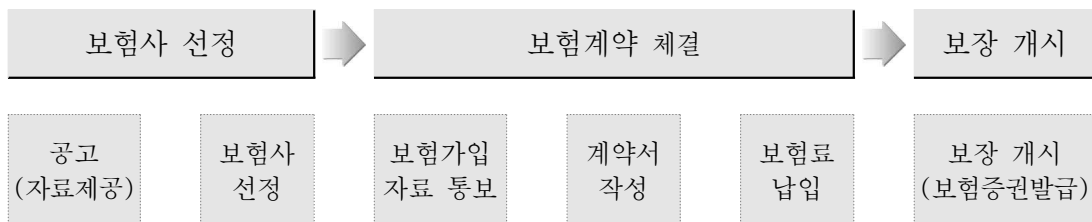
#### (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
- 피보험자 :
  - ① 가정위탁아동(각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 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 ② 부양자 후유장애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부(모) 1인)
- 보험수익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
  - 단, 계약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탁 부모도 수익자로 인정 가능
  - \* 보험사고발생시 의료비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 ※ 단, 부양자 후유장애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 (나) 보험계약 체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후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무원은 보험 약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등 관련정보를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발송
- 피보험자 평균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특약)를 추가하여 보장 내용을 다양화하여 불용액 발생 방지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용도 사용 불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등) 제출

#### [ 업무처리 흐름도 ]



(다)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3. 3. 1)로부터 1년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추가 및 탈퇴)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9호>에 따라 매월 1회 보험사에 통보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회 분납

(라) 보험 해지

-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 기간 중 보험 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단기 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지 사유 발생 시 일할 요율 적용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가) 보험금 청구 : 보험약관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나) 보험금 청구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신청인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서류 제출 가능하며, 타 시도에서 접수 시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송 가능

※ 보험금 청구 양식(보험사 소정양식)

- 청구의 취지와 사고(질병)발생의 근거 및 청구 금액 등을 기재  
(계약내용, 청구사유, 피보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 보험지급 사유별 첨부 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료병원, 경찰서 등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진료병원
입원/통원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필요시 첨부) •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조직검사지	진료병원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입퇴원 확인서	진료병원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사건사실 확인서	경찰서
강력범죄 위로금	• 사건사실 확인서	경찰서
얼굴성형	• 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일상생활배상책임	• 사고확인 공문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치아치료비	•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필요시 첨부) •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 진단서	진료병원
골절발생위로금	• 진단서	진료병원
폭력피해위로금	• 진단서 • 사고증명서(경찰신고서류 또는 조사기록 등)	진료병원 경찰서, 검찰청
식중독위로금	• 진단서	진료병원

※ 보험사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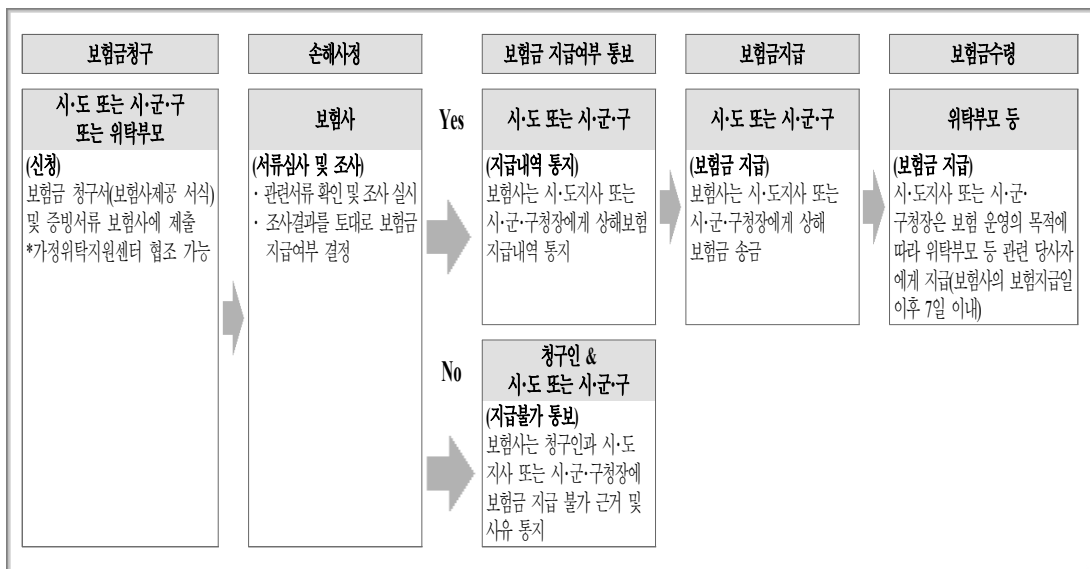
※ 지급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

-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상법 제662조)

(다) 보험금의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정위탁 담당부서)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시·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 ‘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 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정위탁담당부서)에게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 (계좌이체 원칙)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 지급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보험금 지급 처리절차 ]



5. 사후관리

- 시·군·구청장은 위탁아동 보호조치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위탁가정에 안내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10호>에 따라 보험 사고와 관련한 위탁아동의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집계하고 관리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아동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9호>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의 변경 사항(신규 및 종결)을 대하여 매월 1회 시·도지사 및 보험사에 통보
- 보험계약체결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며, 보험 담보내용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를 피보험자(위탁부모)에게 송부

#### IV. 행정사항

##### 1. 계약체결 보고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지침서식 11호>에 따라 보험 계약체결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2. 보험금지급현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침서식 12호>에 따라 상·하반기 보험금 지급현황을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변동인원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부 위임 가능

참 고

[별첨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담보 조정 순서]

-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 암치료비(3천만원 → 2천만원)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부양자 1인 후유장해
- 보험담보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폭력 피해위로금·식중독위로금 → 얼굴성형 → 부양자 1인 후유장해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 위탁아동이 보험담보사항에 대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담보사항을 조정·삭제 불가
  - ※ 보험의 간접비용 성격이 크면서 보험료 비중이 높은 보험담보사항부터 조정

[보험계약시 유의 사항]

1. 보험료 총액 : 가입아동수 × 68,500원 내외
  - ※ 추가 아동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예산 추가 배정 어려움)
2. 보험료 납입 : 일시납(부득이한 경우 2회 분납)
3. 계약기간(보험기간) : 보험개시일('23. 3. 1)로부터 1년
  - ※ 각 시·도에서는 보험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보험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

[보험사 선정 등 추진일정]

- 보험가입자료 파악 및 보험사 선정공고 : '23. 1. 21까지
  - ※ 공고기간 : 10일~5일
  - ※ 1차 공고에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공고(의뢰)를 바른 시일 내 실시
- 보험사 선정 : '23. 1. 28까지(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기 가능)
- 계약체결 : '23. 2. 28까지
- 보장 개시 : '23. 3. 1~

**붙임 2**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업무처리 안내

**I. 개요**

- (목적)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59조(비용 보조)
-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상의 국내입양·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 단,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도 포함

**II. 심리치료지원사업 내용**

1. 사업 기간 및 내역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가격 및 제공기간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심리검사비 : 회당 20만원 이내(1회)
    -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위탁 책정전 사전심리검사가 누락된 위탁아동의 경우 심리검사 실시 및 비용 지원
    - \* 추가 심리검사 필요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이 추가 지원에 대해 결정
    -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회수는 월4회 이상 1회당 50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용 가능
    - \*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심한 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서도 양육 상담비용 지원

- 교통비 : 월 2만원 이내,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할 경우 월 4만원 이내(아동 및 아동보호자 교통비 포함)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시·도는 시·군·구 예산배분 현황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하고 지원 필요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

## 2.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 선정
  - ※ 시·도에서 치료비 대상자 선정이 예산집행상의 문제로 곤란한 경우는 시·군·구에 위임 선정도 가능. 단,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실적을 보건복지부로 보고
  - ※ 시·도에서는 사업기간 중 치료 포기자를 대비하여 예비 인원 확보
  - ※ 위탁부모 상담 중 아동의 심리정서상의 문제나 행동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의사 및 전문 상담소의 치료 필요 소견을 받은 아동을 우선 고려
  - ※ 심리치료 욕구를 가진 아동 발견하여 시·도에서 추천할 경우 초기 상담 및 주의뢰문제 등을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달하여 아동의 사례관리 차질 방지
  - ※ 시·도에서는 예산 집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하고 관할 시·군·구간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

## 3.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군·구청장이 결정 통보한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침서식 13호>의거 시·도지사에게 추천
  - ※ 관할 시·도의 심리치료비지원 예산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유하고 연간 지원 계획 관리
  - ※ 시·도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및 시·군·구 담당자 대상 심리치료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

- 국내입양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침서식 13호>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추천
- ※ 대상자 접수에서 아동의 치료에 대한 동의서, 원하는 치료기관 기재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4.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위탁사항	• 시·군·구청장이 결정 통보한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입양아동

연령	• 만2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입양사항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
치료아동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의사소견서 또는 전문상담소에서 소견서를 받은 아동에 한함

5. 치료기관 선정

가.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관리 인력을 활용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치료기관 선정 및 상담사 자격 증명자료 등)

- 지역 내 소아 정신과 등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 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질의 치료·상담 실시를 위해 다음의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여 선정
- ※ 치료기관의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사의 직접 방문을 통한 심리치료 가능
- ※ 치료기관 선정시 상담사 요건기준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중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치료기관 제출서류) 선정된 치료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취합된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치료대상 아동 관련 서류 : 아동 심리검사보고서(지침서식 15호), 총괄사례보고서(지침서식 16호)
    - ※ 총괄사례보고서는 치료기관의 서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치료 종결한 아동에 한함
    - ※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심리검사보고서를 진단서 혹은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음
    - ※ 치료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월보고 수행
  - 치료기관 상담사 자격 확인 위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치료기관 진료비 지급 위한 서류 : 입금될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제출불가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유서 제출) 각 1부

#### 나. 입양아동의 경우

- 시·도지사로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입양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 입양부모의 치료기관 선정 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치료기관 이용 가능하며, 이 때 시·도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기존 서류로 같음. 추가 서류는 입양 부모가 제출
- 치료기관의 선정 및 상담사 요건기준은 가정위탁아동과 동일
- (치료기관 제출서류) 선정된 치료기관은 입양부모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양부모는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취합된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종류는 가정위탁아동과 동일

#### 6. 진료비 청구 및 지급

- 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 치료기관은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지침서식 14호)’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해당 지역 시·군·구로 진료비를 청구
  - 시·군·구에서는 당해연도말 사업종료 시점인 12월은 당월 15일까지 사업완료



- 진료비 지급 : 시·군·구 담당자
  - 진료비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에 진료비 지급(전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료비)
  - 당해년도 12월은 당월 15일까지 사업완료 및 당월 25일까지 진료비 지급
- 교통비 지급 : 시·군·구 담당자
  -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는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단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할 경우 월 4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 ※ 심리치료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지침서식 17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청구(교통비 영수증 첨부)하며,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교통비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음(지침서식 17호)

※ 단,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한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진료비 및 교통비 청구·지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7. 사후관리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아동에 한해 치료대상 아동, 치료기관에 대한 진료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시·도담당자에게 보고
- 시·도담당자는 치료대상 아동이 중도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 지역가정위탁지원 센터와 협의하여 예비 후보자(위탁아동) 중에서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

### Ⅲ. 행정사항

####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치료비 지원대상자 현황을 아래서식에 의거 **2021.2.10.**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제출

시·도명	전체 치료 기관의 수 (개소)	치료비 지원 대상자 수(명)	예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수(명)	비 고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 진료비 지급 현황 제출

- 시·도지사는 치료비 지원사업 종료 후 진료비 지급현황을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제출

시·도명	치료아동수(명)	진료비 지급액(천원)	비 고



부 록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전문가정위탁사업 -



## 목 차

<b>I. 사업개요</b> .....	<b>85</b>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85
2. 전문가정위탁사업 .....	88
<b>II.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b> .....	<b>91</b>
<b>III. 위탁가정 관리</b> .....	<b>93</b>
<b>IV.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절차</b> .....	<b>96</b>
1.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	96
2. 전문위탁가정 보호(중장기보호) .....	98
<b>V. 재정지원</b> .....	<b>103</b>
1.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	103
2. 전문위탁가정 사업 .....	104
<b>VI. 행정사항</b> .....	<b>107</b>
<b>[참고]</b>	
1.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업 관련 FAQ .....	108
2. 전문위탁가정 사업 관련 FAQ .....	111
<b>[붙임]</b>	
1. 전문위탁가정 기준 .....	114
2.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의 특성 .....	116
3.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현황 .....	?
4. 2022년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계획 .....	?
5. 위탁가정 선정결과 통보서 .....	117
6. 아동용품구입비 결과보고서 및 구매용품 관리양식 .....	118
7. 시도별 전문가정위탁 아동 현황 보고(양식) .....	120
8.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121



## I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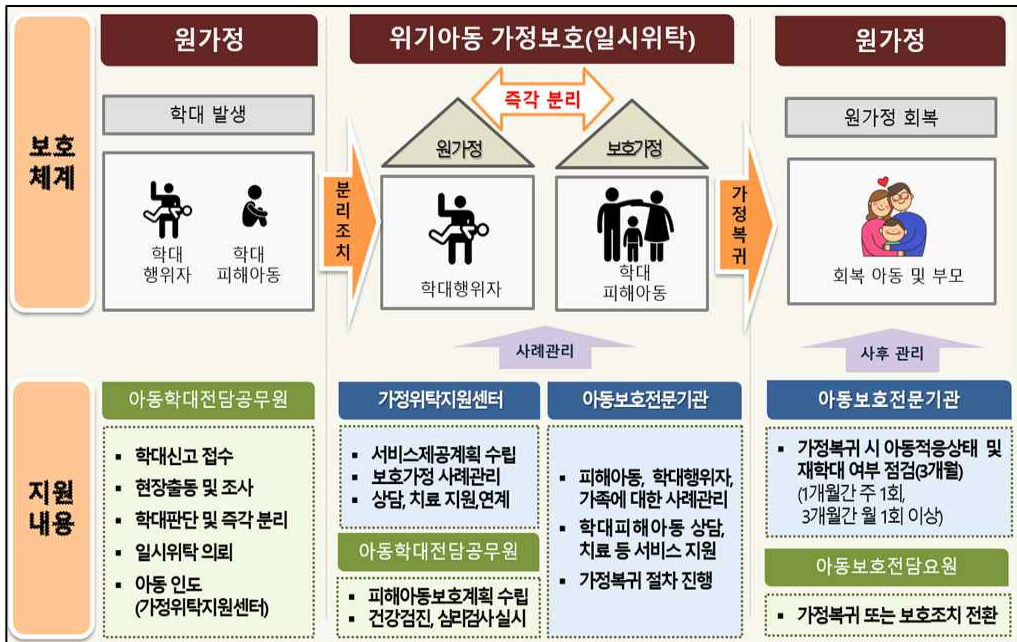
###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21.3.~)

- (정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근거)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1.1.19.)」,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사업대상)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미취학) 학대피해아동
  - \* 즉각분리(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3호) 아동 모두 포함
- (지원대상)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가정
  - \* (자격요건) 전문위탁부모와 동일하게 가정위탁 양육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청소년 상담사 등 자격 소지
- (배치기준) 보호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지원금액) 전문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및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등 지원
  - \*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 동일 가정 내 보호아동이 1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아동 1인당 100만원씩)
- (지원기간) 일시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원가정 복귀 또는 보호조치 등)
  - 일시보호 기간 : 3개월(최대 6개월\*)
    - \* 일시보호기간 연장 필요 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결정
- (추진절차) 보호가정 모집·양성(보장원, 센터) → 보호가정 자격심의·선정결과 통보(지자체)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의뢰(지자체) → 보호가정 연계 및 배치결과 보고(센터) → 사례관리(지자체, 센터)

□ (주체)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총괄 (예산 확보)	사업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보호가정 자격심의, 아동 일시보호 의뢰, 재정지원	보호가정 양성 및 가정환경조사, 부모-아동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학대피해아동 치료 지원, 원가정 사례관리, 아동 가정복귀 절차 진행

< 위기아동 가정보호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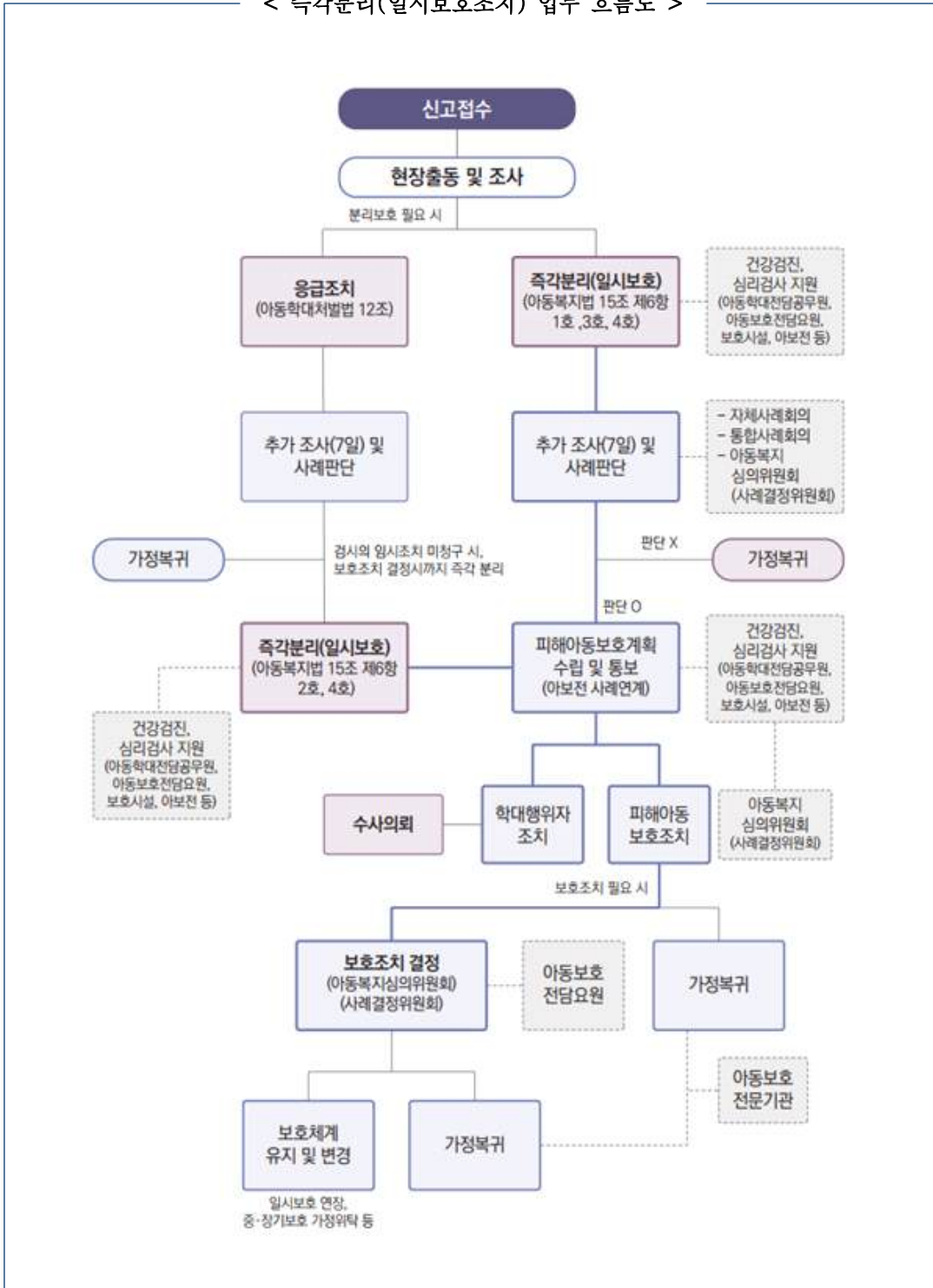


<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비교 >

응급조치	구분	즉각분리(일시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
경찰, 전담공무원	주체	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현장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응급조치 요건 충족 시	요건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재학대 우려, 면밀한 조사 필요 등 즉각분리 요건 충족 시
72시간 * 임시조치가 청구된 경우 법원 결정시까지 * 72시간 산정 시 공휴일, 토요일 제외	기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고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즉각분리가 필요한 경우



<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업무 흐름도 >



## 2 전문가정위탁사업(`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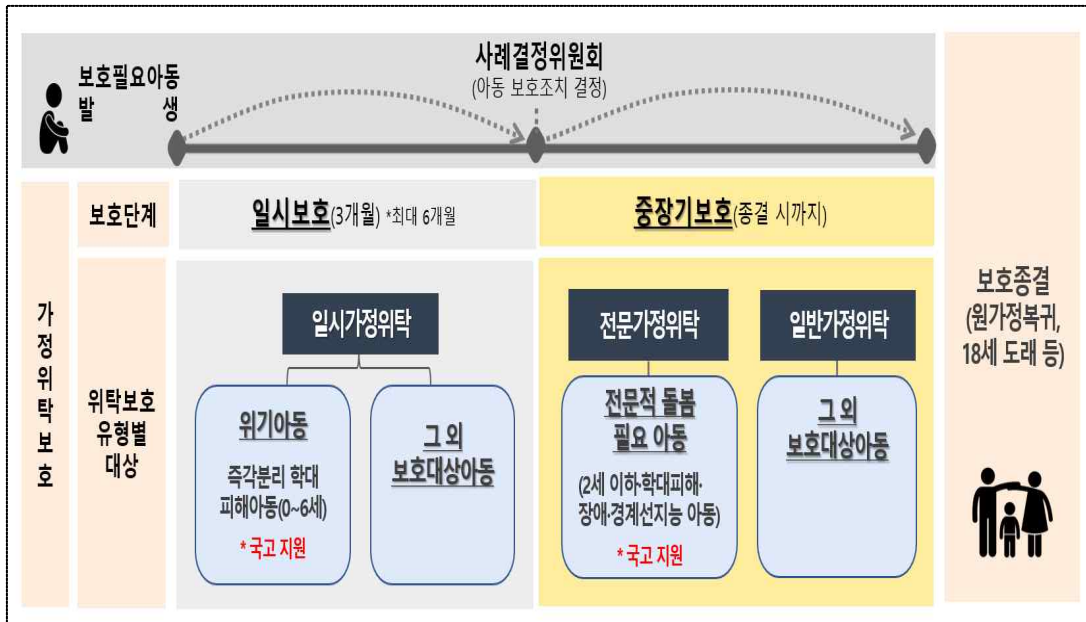
- (정의)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사업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36개월 미만), 장애, 경계선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아동이 2가지 이상의 전문위탁 대상특성(2세 이하이면서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지원대상)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고 사업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자격요건: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①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②가정위탁보호자 경험(비혈연)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심리관련 전공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보호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지원금액)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된 전문가정위탁 사업대상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원\* 지원(양육보조금 별도 지원)
  - \*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
  - 전문위탁가정에 전문가정위탁 사업대상이 아닌 아동이 배치된 경우 전문아동보호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양육보조금은 지원 필요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 (2세 이하) 35개월까지 지원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문적인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형 변경 가능(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 ※ 전문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예시 : 3년 또는 5년)으로 재평가 및 결정(평가도구·체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후 결정)

□ (추진절차) 전문위탁가정 모집·양성(보장원, 센터) →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선정결과 통보(지자체) → 전문위탁 대상아동에 적합한 위탁가정 추천(센터) → 전문위탁가정 책정(지자체) → 사례관리(지자체, 센터)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총괄 (예산 확보)	사업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위탁가정 자격심의, 아동보호조치, 양육상황 점검, 재정 지원	위탁가정 양성 및 가정환경조사, 부모-아동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 가정위탁보호 유형 >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과 전문가정위탁사업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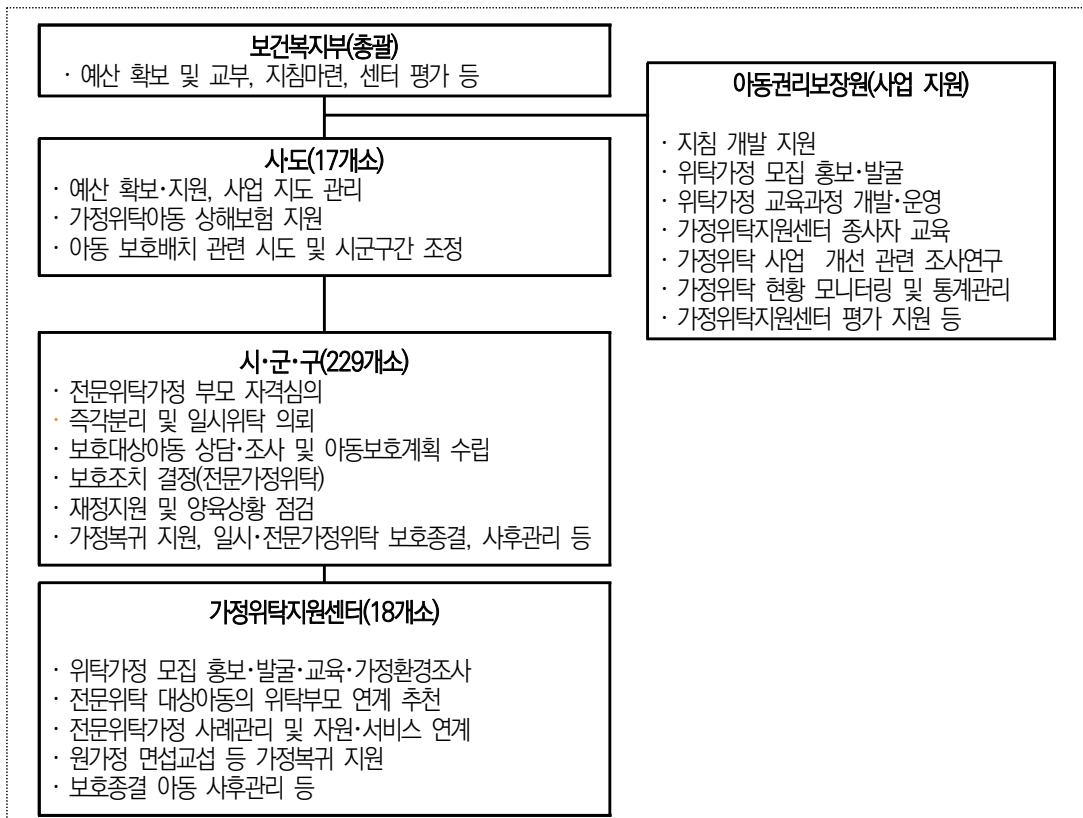
구분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가정위탁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 (일시위탁 근거조항)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가정위탁 보호조치 근거조항)
보호형태	일시보호	장기보호
보호기간	3개월 일시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이후 장기보호로 전환	보호종료 시까지 (원가정 복귀 또는 연령도래 등) * 2세 이하 아동 36개월 도래 시 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대상아동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 6세 미만(미취학)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위탁가정요건	전문위탁부모 자격	
배치기준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우선 고려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 형제·자매 등의 경우 함께 배치 원칙) ※ 가정 내 18세 미만 양육 자녀의 수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위탁아동 1명 이상 배치 시 지원기준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 (아동 1인당 100만원씩)	-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원 (아동 1인당 100만원씩, 양육보조금 별도 지원) * 일반위탁아동 : 양육보조금 지원
재정지원	(공통)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국비), 상해보험료(국비), 심리검사·치료비(국비),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정양육(영아)수당(만 7세 미만),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등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국비)	양육보조금(30~50만원, 지방비)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지방비)
보호절차	시군구(아동발생 소재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 소재지)에 아동보호 의뢰	시군구(아동발생 소재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보호조치 결정

## II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 및 교부, 지침마련, 센터 평가 등 **사업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부모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침 개발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연구, 현황 모니터링·통계관리 등 **사업 지원**
- (시도)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 지도관리, 아동 보호배치 지역 간 조정
- (시군구) 위탁부모 자격심의, 아동상담 및 보호조치(사례결정위원회), 양육상황 점검 및 가정복귀, 재정지원 등 **사업운영 및 관리감독**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발굴·교육, 가정환경조사, 아동 위탁가정 연계·배치, 위탁 아동 사례관리 등 **사업 운영**

### <전문가정위탁 사업 추진체계 >



□ 사업 추진절차

**< 업무 수행절차 >**

절차	위탁가정 관리	가정위탁아동 보호·종결		
	① 위탁가정 양성·자격심의	② 보호대상아동 연계(의뢰)·보호결정	③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④ 전문가정위탁 보호종결
내용	·모집·홍보 ·자격확인 및 가정환경조사 ·양성교육(20시간) ·범죄경력 조회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 및 결정	⇒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조사 ·전문위탁가정 연계·배치 ·전문위탁 보호 결정(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적응상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지원 ·재정 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 ·위탁·보호종결 ·종결아동 사후관리
주체	복지부, 보장원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지자체, 센터

① 위탁가정 양성·자격심의

- 전문가정위탁 사업 홍보를 통한 **위탁부모 모집**, 위탁부모 신청자 대상 **자격심의\*** 및 **최종 자격인정**

\* 자격확인 및 가정환경조사, 양성교육(20시간),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판단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등

② 보호대상아동 연계(의뢰)·보호결정

-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적합한 **위탁부모 추천** 및 **연계·배치**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위탁보호** 또는 **전문위탁보호 결정**

③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상태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재정지원 등

④ 보호종결

- 중장기 보호조치 또는 원가정 복귀, 연령도래 등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

### III 위탁가정 관리

□ **위탁가정 모집·홍보**(보장원·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보장원) TV, 옥외광고 등 전국 단위 홍보 실시 및 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21.12.21~)
- (지자체/센터) 지역사회 단위 홍보\* 실시, 가정위탁 전국 대표번호(1577-1406)에서 상담 제공 및 홈페이지·전화·우편 신청·접수
  - \* TV, 라디오,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SNS, 지역별 홍보매체 등 활용

□ **자격확인 및 가정환경조사**(가정위탁지원센터)

- (자격요건 확인) 전문위탁가정 기준(나이, 직업, 소득, 가족관계 및 복지·교육·의료·상담 자격증 등) 충족여부 확인
- (가정환경조사) 신청인 가정의 양육환경 적합성 확인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 가정조사서'(별지 제2호) 활용

※ '일반위탁부모'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 확인하여 '전문위탁부모' 전환

- 기 확보되어 있는 일반위탁부모 대상으로 전문위탁부모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참여의사 등을 확인하여 전문위탁가정(위기아동 보호가정) 전환 추진
- \*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 시 기 확보되어 있는 '위기아동 보호가정' 인력풀 활용

□ **양성교육**(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 전문위탁가정 최소 1인\*은 20시간 이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그 배우자도 최소 5시간 교육 이수 권고

- \* 자격증 기준 충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정위탁보호자(비혈연) 경험 3년 이상 요건 충족 : 주 양육자 1인

◇ 신규 위탁부모는 가정위탁보호제도 및 위탁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센터주관 일반위탁부모 양성교육 5시간 추가 실시 권고

- ※ 전문가정위탁 보수교육 :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전문가정위탁 양성교육 이수자 대상 매년 5시간의 보수교육 실시

- **(센터)**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전문강사 및 부모양성교육 표준교재\* 활용·교육  
\* '20년 보장원에서 개발한 교재 가정위탁지원센터(18개소)에 각 20부씩 배포('21.11.)
- **(보장원)**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20시간) 운영 지원
- **자격심의(가정위탁지원센터·지자체)**
- **(센터) 자격심의 관련 서류(범죄경력·아동학대판단이력 조회 동의서 등)를 지자체에 제출**  
(①~⑧)하여 자격심의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자체 제출 서류]**

- ①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②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③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④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⑤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 ⑥ 전문가정위탁 양성교육 이수증
- ⑦ 전문가정위탁 관련 소지 자격증 사본 또는 일반위탁부모 활동기간 확인서류
- ⑧ 기타 서류(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위탁가정에서 동거중인 18세 이상의 구성원은 ③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④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

-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결격사유(범죄경력, 아동학대 판단이력) 조회 실시**, 자격증·가정환경조사·전문교육 이수 등 **기타 관계서류(①~⑧) 확인하여 자격 최종 인정**
-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가정위탁 담당공무원)에서 자격 검토하여 선정여부 결정 및 즉시 통보
- ‘전문위탁부모’ 선정결과를 해당 센터에 통보(붙임5 서식)하여 각 센터에서 위탁가정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실시)

**[전문위탁가정 자격심의 관련 지자체의 확인 서류]**

- ①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②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③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④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 ⑤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 ⑥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요청 결과 통보서
- ⑦ 전문가정위탁 양성교육 이수증
- ⑧ 전문가정위탁 관련 소지 자격증 사본 또는 일반위탁부모 활동기간 확인서류



□ 전문위탁가정 인력풀 등록·관리(보장원·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 지자체에서 자격심의를 통해 선정한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정보를 인력풀에 등록하여 관리
  - 전국 단위 인력풀 관리를 위해 전문위탁가정 선정현황(위기아동 보호가정 포함)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매주)
    - \* 전문위탁가정 인력풀 조사양식은 ‘붙임’ 파일(엑셀) 별첨
  - 위기아동 보호가정(일시보호) 현황(정·현원)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추가로 ‘보호아동 현황 웹’에 입력(매일 18시 마감)
- (보장원) 지자체에서 아동 연계·배치 시 활용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관리하여 전국에 정보 공유
  -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문위탁가정 Pool」을 사전에 공유

[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 아동\*의 위탁유형 전환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현재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을 우선적으로 전문가정가정으로 전환
  - \* 2세 이하, 학대피해, 장애, 경계선지능아동
- (대상) 비혈연 위탁가정. 다만, 친인척(대리양육)위탁가정인 경우라도 ①가정위탁경험(비혈연) 3년 이상이거나, ②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 책정 가능
- (교육) 전문가정위탁교육(20시간) 필수 이수. 기 이수한 경우 추가 이수 불필요
- (자격심의) 전문위탁가정 기준(붙임 1)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
  - \* 동일 가정 내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은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Ⅳ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절차

### 1]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 1-1) 위기아동 일시보호 의뢰

##### □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일시보호 의뢰(지자체)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 요건에 해당되는 **6세 미만 (미취학)** 학대피해(의심)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 조사기간동안 아동이 보호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일시 보호 의뢰**
    - \* 야간·휴일에 보호가정 연계가 지연되는 경우 보호가정 연계 시까지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 함
  -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일시위탁을 의뢰**하고,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자(보호가정 소재지)에게 공유**
    - \*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전문위탁가정 Pool」을 활용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위탁 후, 일시보호의뢰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후 송부 가능

#### 1-2) 위기아동 보호가정 연계·배치(일시위탁보호)

##### □ 위기아동 보호가정 연계·배치(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문위탁가정 Pool」 내에서 의뢰아동에게 **적합한 보호가정을 선별**하여 연계·배치
  - 아동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대기 중인 보호가정 중 적합한 보호가정에 연계
    - \* 아동의 주소지 근거리 지역 순(해당 시군구 → 인접 시군구 → 해당 시·도 → 인접 시·도 → 전국)으로 검토
  - 아동을 보호가정에 인도 후, 배치결과를 시·군·구(아동발생 소재지, 보호가정 소재지)에 보고
    - ※ 위기아동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중 최소 1명은 상시 유선 연락체계 유지
  - **일시보호기간(보호가정 인도 전후) 동안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실시**
    - \* 아동에 대한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 특히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영유아, 장애아동의 경우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체 증상 발생 또는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음에 따라 가급적 빠른 건강상태 확인 필요)

- 학대피해(의심) 아동을 보호가정으로 인도하고, 보호자를 통해 확인한 아동에 대한 정보·특이사항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보호가정에 공유
- \* 일시보호의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를 전입신고하지 않음(추후 중장기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또는 보호시설 주소지로 전입신고 처리)
-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추가조사(가정환경 조사 포함)를 실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해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

### 1-3)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례관리

-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례관리(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배치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이후 주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사례관리 수행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협조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 협조

### 1-4) 위기아동 가정보호 종결

- ◇ 위기아동의 일시보호(3개월) 목적 달성 시(원가정 복귀, 장기 보호조치 등)까지 보호하고,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 또는 장기보호 전환(전문·일반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
- \* 부득이하게 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반드시 지자체(아동발생 소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 또는 장기보호 전환(전문가정위탁 등),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

- 원가정 복귀(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필요시 심리치료 지원 등 관계회복 지원)
  - 아동학대 판단 사례이나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복귀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실시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복귀 후 3개월 간(1주일 이내 가정방문, 1개월 간 주 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적응상태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

○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절차에 협조

※ 일시보호 기간동안 위기가동에 대한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보호가정에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원가정 복귀 시 친부모가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자 변경 필요성을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전에 공유)

□ **중장기 보호조치(지자체)**

○ 현재 보호중인 위기가동의 중장기보호 시 **위기아동 보호가정(일시)에서 전문위탁가정으로 전환하여 동일 가정에서 지속 보호**하도록 유도

※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3호 가정위탁보호(중장기보호) 결정 필요

## 2 전문가정위탁 보호(중장기보호)

### 2-1) 아동 상담·조사 및 가정위탁보호 의뢰

□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및 가정위탁보호 의뢰(지자체)**

○ (지자체)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해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아동이 전문위탁가정에서 중장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연계 의뢰

\* 전문위탁가정으로 연계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수립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문가정위탁 조치 의뢰

#### 〈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 여부 확인방법 〉

- 2세 이하(36개월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內 출생일 정보 확인
-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공유해준 '피해아동보호계획서' 內 아동학대사례판단 정보 확인
  -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해 확인(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등)
-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
- 장애아동: 장애인 등록증(또는 주치의 진단서\*)
  - \* 장애 판단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대체서류 확인

[참고: 정보확인 관련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제10항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의 확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여부의 확인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위탁가정 추천**(가정위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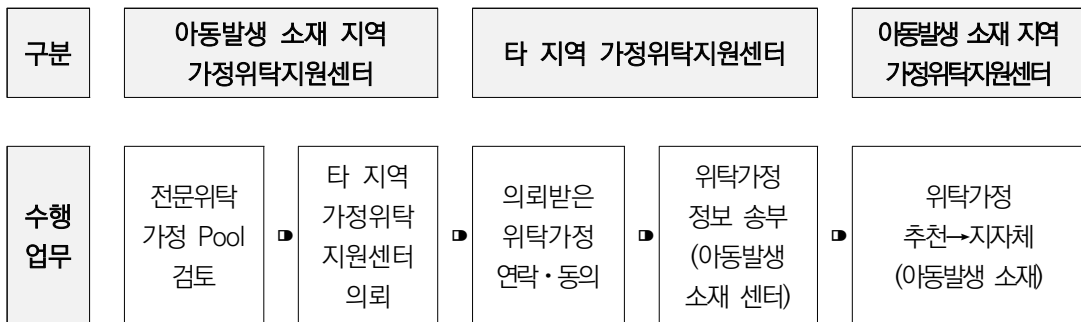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위탁가정 Pool」 내에서 의뢰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별**하여 지자체(아동 발생 소재지)에 **추천\***

\* 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활용

○ 지자체에서 위탁가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 인접 시·도 → 전국 순으로 검토하여 아동의 3배수로 추천

\* 보호대상 아동의 주소지(시군구) 근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위탁가정 우선 검토

< 위탁가정 추천절차 >



## 2-2) 전문가정위탁 보호결정

###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원칙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 ◇ 가정위탁은 전국 단위의 보호를 원칙으로 함

- 아동 소재 시·군·구 내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타 지역 위탁가정을 추천받아 보호 실시

### □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지자체)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천 위탁가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전문가정위탁) 결정**

\* (근거법령)「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 적합한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재추천 요청

- **기존 일반가정위탁보호(비혈연) 중인 아동** 중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전환 추진**

※ 아동이 두 가지 이상의 전문위탁 대상특성에 해당(2세 이하이면서 학대피해아동)되거나, 중증도 이상의 장애가 있거나, 최근 학대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전환 고려

- **아동 상담 시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서 수립 시 아동의 보호자에게 ‘가정위탁보호동의서’ 확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대행위자의 경우 제외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는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①~⑪ 서류 첨부)**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④·⑥·⑦·⑨·⑩ 서류 생략, ⑪은 피해아동보호계획서로 같음

※ 동일 시군구 내 아동 보호 시에는 가정위탁 담당부서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 [전문가정위탁 결정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서류]

- ①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 ②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 ③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 ④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 ⑤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 서식 3호)
- ⑥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⑦ 육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4호)

- ⑧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⑨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8호)
- ⑩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9호)
- ⑪ 개별보호·관리계획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1호)

□ 아동의 위탁가정 인도·배치(지자체)

- 시·군·구(아동 발생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문위탁보호 결정된 아동을 위탁가정에 인도
  - \* 아동 인도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부모와 협의를 통해 협력하여 진행
  - 아동 배치 후 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 단,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아동 주소지 열람제한 사전 조치 등 유의
  - \* 전입신고서(전 세대주 도장 날인본)와 보호결정(변경) 통지서 등 증빙서류 준비

2-3) 전문위탁가정 사례관리

□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사례관리(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등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유선으로 위탁가정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상태·변화 정도,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점검
  -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 변경
  - 학업 등 타당한 사유 없이 위탁아동의 실거주지가 위탁가정의 주소지와 불일치하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서 확인한 아동의 개별보호·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후 시·군·구 보고
  - 서비스계획에 맞춰 위탁가정(아동), 원가정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아동 적응상태 모니터링 사례관리 실시
  -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및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진행

〈참고〉 '전문가정위탁 사례자문위원회(아동권리보장원)'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효과적 사례관리를 위해 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 사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중으로(\*20~), 지역의 난이도 높은 전문가정위탁 사례에 대한 전문적 자문 필요 시 활용

2-4) 전문가정위탁보호 종결 및 사후관리

◇ 위탁아동의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원가정 복귀, 18세 연령도래, 보호조치 변경 등)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종결 여부 결정

-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종결은 사전 대면심의 원칙 (보호연장의 경우 사후·서면심의 등 절차 간소화 가능)

□ 원가정 복귀(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가정복귀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를 제출받고,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의견 청취 후 원가정을 방문하여 문제 해결여부 등 양육 준비상황 확인

\* 가정복귀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7) 활용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절차에 따라 원가정 복귀

- 원가정복귀 후 1주일 이내 가정방문, 1개월 이내 2회 이상 아동 적응상태 점검, 6개월 이후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원가정 복귀 준비 아동에 대한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내용 등을 포함한 '가정복귀 의견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9)'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최소 6개월동안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실시

□ 18세 연령도래 종료(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자체)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최초 2년간 연 2회, 이후 연 1회 정기적 유선상담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 '아동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제출

\*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동의서(지침서식 5의1호) 확보

-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5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



## V 재정지원

### 1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일시보호)

####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위기아동(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 보호가정 내 위기아동 1명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보호가정 역량에 따라 추가 배치 가능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3개월 원칙이나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최장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지급주체)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 (지급방법) 매월 20일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지급일(20일)까지 1주를 초과하여 지속 보호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지급 보류 후 해당 월 말일에 추가 지급 가능
  - (지급금액) 보호주수 X 주 25만원
  - (지급기준) 당월 보호결정일이 속한 주(보호중인 경우는 전월의 20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 주수를 산정
  - (보호 주수) 각 주에 3일(보호결정일, 종료일 포함) 이상 보호 시 1주로 반영
  - ※ 다만, 7일 이내에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보호주수 및 보호일수와 무관하게 1주로 반영하여 25만원 지급
  - ※ 위기아동 보호가정(일시보호) 대상 전문아동보호비(국비·지방비 매칭 지원)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 보호비(지방비 100%) 중복 지원 불가

#### □ 아동용품구입비(국비)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급금액) 보호가정 책정 시 최초 1회 100만원
  - ※ 이후 위기아동 연계 시마다 위기아동 1인당 50만원 지원

- (지급주체)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
- (지급방법) 보호결정일로부터 3일 내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이 속한 경우 그 익일까지 지급)
- (사용용도) 위기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 \* 아기침대, 침구, 옷장, 의류, 카시트, 유모차 등
- (지급관리) 보호가정은 보호종료 시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제출,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보호가정별 구매용품 내역 관리
  - 보호가정은 활동기간동안 구매용품 지속 활용, 필요시(활동종료 등) 가정위탁지원센터로 구매용품 인도 가능\*
  -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인도받은 아동용품을 보관·관리

※ 시·군·구 간 아동 일시보호 의뢰 및 보호가정 배치 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전문아동보호비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2 전문가정위탁사업(중장기보호)

###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만 2세 이하) 35개월까지 지원
    - ※ 36개월부터는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가정위탁보호로 전환(일반가정위탁보호 전환 시 양육보조금 등 지방비 지원 유지 필요)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종료 또는 원가정 복귀 시까지 지원
    - ※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문적인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형 변경 가능(일반가정위탁으로 전환)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가정위탁 담당)에서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일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지급

-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50% 지급
-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100%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전문가정위탁사업의 전문아동보호비 지급업무를 처리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양육보조금(지방비)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지원 권고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지원기간) 가정위탁보호 종결 시까지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일)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지침 참고

□ 아동용품구입비(지방비)

- (지원대상) 신규 책정 위탁가정
- (지급금액)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지급방법) 양육보조금 지급 개시 시 위탁부모 계좌로 최초 1회 지급
- (사용용도)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자세한 내용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지침 참고

< 가정위탁보호 아동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

구분	지원대상 (①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②전문가정위탁 사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시군구: 위탁가정 소재지)	신청서류
전문아동 보호비	①, ②	월 100만원	시·군·구(가정위탁 담당자): 보호기간에 따라 매월 20일 위탁가정(보호가정) 계좌로 지급	-
양육보조금	②	- 만7세 미만(~83개월): 월30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40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 월50만원 이상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매월 20일 아동 또는 위탁가정 계좌로 지급	-
아동용품 구입비 (국비)	① *전문가정위탁 아동은 자비용 지원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1권 참고)	최초 1회 100만원 (보호가정 당 1회)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보호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보호가정 계좌로 지급	- *(참고) 보호가정은 보호종료 시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 제출 필요
상해보험 가입	①, ②	연 6만8천5백원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보호결정 시 상해 보험 가입 처리	-
심리검사· 치료비	①, ②	- 검사비 20만원(1회) - 치료비 월 20만원 이내(12개월)	- 가정위탁지원센터: 검사료 지원대상 추천 - 시·도 또는 시·군·구(가정위탁 담당자): 지 원대상자 선정 - 치료기관: 진료비 청구시 지급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①, ②	- 생계급여 월 55만원 - 주거급여 월10~19만원 (단, 위기아동 가정보호, 일시위탁은 주거 급여 대상 제외) - 의료·교육은 개인별 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근거)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 가능	- *(참고) 수급권자 가구원 및 친척 등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구비서류 필요
아동수당	①, ② (만 8세(95개월) 미만 해당아동)	월 10만원	-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아동수당 담당자 에게 보호자 변경 조치 요청 - 시·군·구(아동수당 담당): 보호자 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호가정에 안내·변경 처리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확인 서류 (*가정위탁 담당자가 제출)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①, ② (만 7세(86개월) 미만 해당아동)	- 만 0세(~11개월): 월 20만원 - 만 1세(12~23개월): 월 15만원 - 만 2~6세(24~86개월): 월 10만원 ※ 영아수당(0~23개월*): 월 30만원 * 22.1.1. 출생아부터 적용(중복 지급 불가)	- 시·군·구(가정위탁 담당) 또는 가정위탁지원 센터: 보호가정에 보호자 변경 신청 안내 - 위탁가정(보호가정):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보호자 변경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에 한함)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0~24개월)	①, ② (만 2세(24개월) 미만 해당아동)		- 위탁가정(보호가정)이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VI 행정사항

- (시·도 및 시·군·구) 위탁부모 선정,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 등
  - (위탁부모 선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위탁부모 신청인의 **결격사유**(범죄경력, 아동학대 판단이력) 존재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가급적 2주 이내에 자격인정 및 선정결과 통보**
  - (전문가정위탁보호 현황 관리) 전문가정위탁사업 대상 아동에 대해 전문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현황을 보건복지부로 보고
    - 제출시기 : 분기말 기준 작성,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제출
    - 작성양식 : [붙임7]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부모 교육 및 인력풀 운영
  - (교육)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500명 이상) 운영
    - \* 교육일정 등은 [붙임4] 2022년 전문위탁가정 양성교육 계획 참고
  - (「전문위탁가정 Pool」 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일선에 전국 전문위탁가정 Pool 공유(매주)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시 연계체계 운영, 전문위탁가정 Pool 등록, 위탁가정 추천 등
  - (상시 연계체계 운영) 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특성에 맞게 야간 및 주말 유선당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센터장(관장) 및 지자체는 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주말에 출근하게 될 경우 탄력적 근무 시간 운영, 대체휴무 등을 활용해서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 지자체는 필요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전문위탁가정 Pool」 등록) 지자체에서 자격심의를 통해 선정한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매주)
    - \* 전문위탁가정 인력풀 조사양식은 ‘붙임’ 파일(엑셀) 별첨
  - (위탁가정 추천 협조) 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가정 추천 요청 시, 등록된 인력풀 대상 연락 및 동의 확보하여 정보 제공(발생 시)
  - (교육) 전문강사 활용하여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 실시
- (공통사항) 가정위탁사업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공무원 퇴직자 교육, 자격단체 보수교육, 종교단체 모임, 입양부모 등) 등을 통해 신규 위탁가정 발굴·모집

## 참고 1 위기아동 보호가정 사업 관련 FAQ

## [재정지원 관련]

## 1. 전문아동보호비 보호주수 산정 및 지급방법은?

-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위기아동 일 시보호 기간에 대하여 매월 20일 보호가정 계좌로 ‘보호주수 X 주 25만원’을 계산하여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 보호 결정일이 속한 달에는 보호 결정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 주수를 산정
  - 지속 보호 중인 달에는 전월의 20일이 속한 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의 전주까지 보호 주수를 산정
    - ※ 지급일(20일)까지 7일을 초과하여 지속 보호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지급 보류 후 해당 월 말일에 추가 지급 가능
- 보호 주수 산정 시 각 주에 3일(보호결정일, 종료일 포함) 이상 보호한 경우 1주로 반영하여 ‘보호주수 X 주 25만원’ 지급
  - 다만, 7일 이내에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보호주수 및 보호일수와 무관하게 1주치 25만원 지급

## (사례 1) 보호기간이 '23.3.8.(화)~5.9.(월) 인 경우

- (3월 지급분) 보호 결정일이 속한 주인 4월 2주는 보호 결정일을 포함한 보호일수가 5일(화~토) 이므로 보호주수에 반영, 따라서 4월 2주부터 20일이 속한 주(4월 4주)의 전주인 4월 3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2주)
  - ☞ 2주 X 25만원 = 50만원(3.18.지급)
- (4월 지급분) 전월의 20일이 속한 3월 4주부터 당월 20일이 속한 주(4월 4주)의 전주인 4월 3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4주)
  - ☞ 4주 X 25만원 = 100만원(4.20.지급)
- (5월 지급분) 보호 종료일이 속한 주인 5월 2주는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보호일수가 2일(일,월)이므로 보호주수에 미반영, 따라서 전월의 20일이 속한 4월 4주부터 5월 1주까지 보호주수 계산(총 3주)
  - ☞ 3주 X 25만원 = 75만원(5.20.지급)

(사례 2) 보호기간이 '23.3.14.(월)~3.16.(수) 인 경우

- (3월 지급분) 보호 결정일 및 종료일이 속한 주인 3월 3주에 보호일수가 총 3일이나, '7일 이내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로서 1주치 25만원 지급
  - ☞ 1주 X 25만원 = 25만원(3.20.지급)

(사례 3) 보호기간이 '23.3.10.(목)~3.16.(수) 인 경우

- (3월 지급분) 보호 결정일이 속한 주인 3월 2주의 보호일수는 3일(목,금,토) 및 종료일이 속한 주인 3월 3주의 보호일수는 4일(일,월,화,수)로 보호주수에 모두 반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총 보호일수가 7일로 '7일 이내 보호결정 및 보호종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1주치 25만원 지급
  - ☞ 1주 X 25만원 = 25만원(3.20.지급)

(사례 4) 보호기간이 '23.3.17.(목)~3.23.(수) 인 경우

- (3월 지급분) 3월분 지급일인 3.20일까지 7일을 초과하여 지속 보호할 지가 불확실한 경우 3월분 지급 보류 후 말일인 3.30.에 추가 지급 가능, 총 보호일수가 7일로 1주치 25만원 지급
  - ☞ 1주 X 25만원 = 25만원(3.30.지급)

2. 보호가정 내 위기아동 2명 보호 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방법은?

- 보호가정 내 위기아동 1명 배치를 우선 고려하나, 위탁가정 역량과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 배치 가능하므로,
  - 보호결정일 및 종료일이 동일한 경우 위기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급
    - \* 위기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 지급금액 X 2명
  - 보호결정일 및 종료일이 다른 경우 위기아동별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 \* 위기아동 A, B 각각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 당월 지급금액 계산하여 지급

### 3. 위기아동 가정보호 시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 보호가정 소재지\*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가정 일시보호 의뢰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기아동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필요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호가정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 거주지인 보호가정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접수

\*\*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복지지원 가능

- 학대피해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보호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학대피해아동을 “별도가구”로 보장

### 4.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후 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 전환 시 재정 지원은?

○ 일시보호 중인 위기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전문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하는 경우

-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국비 보조)는 일시보호 종료일까지 보호주수 산정하여 지급

- 장기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30~50만원(권고) 양육보조금(지방비 100%) 지급

-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100만원의 전문아동 보호비(국고)를 전문위탁부모에게 지급



## 참고 2 전문가정위탁 사업 관련 FAQ

### [자격심의 관련]

####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 위탁가정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시·군·구의 조치 사항은?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 시·군·구는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이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자격 최종 인정 사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 \* 기존 위탁부모의 경우 과거 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아동 연계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범죄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내역은 1년간 유효
  -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이행 필요

### [재정지원 관련]

#### 2. 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형제자매 2명 이상 보호 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방법은?

- 위탁가정 내 전문가정위탁아동 1명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동일 위탁가정 내 다른 아동 배치 시 아동이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인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 \* 형제자매 모두 전문위탁 대상 아동인 경우 아동수에 비례하여 각각 100만원 지급
  - \*\* 전문위탁가정에 전문가정위탁 사업대상이 아닌 아동이 배치된 경우 전문아동보호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양육보조금은 지원 필요

#### 3. 위기아동 가정보호(일시보호) 후 동일 가정 내 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 전환 시 재정 지원은?

- 일시보호 중인 위기아동에 대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정위탁으로 장기 보호조치하는 경우
  -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대한 전문아동보호비(국비 보조)는 일시보호 종료일까지 보호주수 산정하여 지급

- 전문가정위탁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100만원의 전문아동 보호비(국비 보조)를 전문위탁부모에게 지급
  - \*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으로 책정되어 보호중인 아동 수에 비례
- 장기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책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30~50만원 (권고) 양육보조금(지방비 100%) 지급
  - \* 양육보조금 지급은 '2022 가정위탁 사업 운영지침' 참고

### [위탁가정 자격요건]

#### 4. 위탁가정의 기본 자격요건(연령, 자녀 수, 혼인여부, 맞벌이 여부 등)은?

- (연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따라, 위탁부모(부부 모두)의 나이가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함
  - \*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 연계 시점에 위탁부모 연령차이 고려
- (양육아동 수) 위탁가정 내 자녀 수(18세 미만 친자녀 및 위탁아동)는 3명 이하여야 하고, 위탁가정 내 전문위탁아동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함
  - \* 단, 형제·자매 아동이 함께 동일한 위탁가정에 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가정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
  - 향후 배치될 아동을 고려, 현재 자녀 수(18세 미만 친자녀 및 위탁아동) 2명 이하인 가정이 지원 가능
- (혼인 여부) 위탁가정 선정 시 혼인이 필수 조건은 아님. 다만, 위탁가정 연계 시 자녀 양육경험을 고려함
- (맞벌이 여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5.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종사자)도 위탁가정 신청 가능한지?

- 보육시설 종사자도 위탁가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기 직장(보육시설) 내에서 근무시간에 보육시설 아동들과 위탁아동을 함께 돌보는 것은 부적절

**6. 전문가정위탁 아동 주소지와 위탁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권한이 있는 아동 발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하여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일시보호(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는 전입하지 않으며, 중장기보호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후 위탁가정 주소지로 전입처리

\*\* 가정위탁 보호와 관련한 재정지원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

**붙임 1 전문위탁가정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마. 가정위탁보호자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1)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마)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 또는 2)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 사.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바목 1)의 가정위탁보호자의 경험은 친인척 외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을 말함

※ 참고 : 위탁가정 선정 시 추가 검토사항

-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양육하기에 필요한 성품·경험·지식을 갖춘 자를 위탁부모로 선정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되, 시장·군수·구청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양육 경험이 없는 자도 선정 가능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위탁부모의 주소지에서 동거할 것)
- 위탁아동을 건강하게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복지기관 또는 이웃주민의 추천 등
- 위탁부모가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선정 기준)에 따라 위탁부모가 될 자격이 있을 것

**붙임 2 전문가정위탁 대상아동의 특성**

\* 참고: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및 2세 이하 영아의 특성 등

① 학대피해아동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sup>1)</sup>.

학대유형	심리적/행동적 특성
신체학대	공격적, 충동성, 위축, 정서불안, 강박, 우울, 자아기능 손실, 병적 대인관계, 원시적 방어기제, 자아개념의 손상, 낮은 자아존중감
정서학대	위축, 좌절, 정서적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심한 애착, 우울, 수동적, 강박, 낮은 자아존중감, 부적절한 대인관계형성, 불안
성학대	공포와 불안, 우울, 분노, 낮은 자아존중감 등 정서적 부적응, 퇴행행동
방임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 위축,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부정적 자기상, 자기 표현력 부족, 방어적, 열등감, 비관적 태도

○ 아동학대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아동이 가진 내적 신념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피해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간주하려고 하게 됨<sup>2)</sup>.

② 경계선지능아동

○ 경계선지능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TR)'에 의하면 'IQ 71~84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발달장애군'으로 정의하며, 미국의 의학사전 및 관련 사전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적응행동에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음<sup>3)</sup>.

○ 경계선지능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으로 소외됨<sup>4)</sup>.

○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은 취업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자립에 실패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비행이나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sup>5)</sup>.

③ 영아

○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3세에 이르렀을 때, 회피적·불안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보다 애착 관련적 정보에 대해 더 우수한 주의집중 능력과 기억 능력 등을 지니고 있음<sup>6)</sup>.

○ 초기 2년 간의 안정적 애착의 발달이 다른 성인이나 또래 아동들과의 높은 사회성, 부모와의 높은 순응성 및 효과적인 감정 조절 능력이 있음<sup>7)</sup>.

1) 「한국판 실버그림검사에 나타난 피학대 아동의 특성」, p2, 2007, 백현순·조현태  
 2)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p226, 2006, 정익중  
 3)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p11, 20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4) 「경계선 지적 기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박숙자, 2016)의 내용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김고은·김혜리, 2018)에서 인용함.  
 5) 「집단놀이치료가 경계선 지능 시설아동의 사회기술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최윤미, 2016)의 내용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에서 인용함.  
 6) 「애착과 애착의 발달」, p22, 2001,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7) 「애착과 정신병리」, p41, 2004, 안동현

**붙임 3 위탁가정 선정결과 통보서**

(서식)

**위탁가정(보호가정) 선정결과 통보서**

시·도(시·군·구) : \_\_\_\_\_

위탁가정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자격 (해당사항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가.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input type="checkbox"/>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input type="checkbox"/>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input type="checkbox"/>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input type="checkbox"/>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input type="checkbox"/>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input type="checkbox"/> 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위탁가정 선정일	년	월	일

위 가정은「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임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붙임 4 아동용품구입비 결과보고서 및 구매용품 관리 양식**

아동용품구입비 사용 결과보고서			
□ 위기가동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보호기간	'21.4.8. ~ 5.16.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보호가정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소속센터		연 락 처	
작성일자		지원금액	1,000,000원
구입 목록	물품 목록		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1,000,000
사진	구입물건, 영수증, 구입물건을 사용하는 모습 등 ※ 아동 얼굴 비공개		







**붙임 6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대표전화) 1577-1406(아이사랑양육)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3층	02-325-9080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051-758-8801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3층	062-351-1206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1 1층	053-656-2510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94번길 4 8층	032-866-1226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052-286-1548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804호	042-242-5240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2층	033-255-1406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78 4층	031-821-9117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7층	031-234-3980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5층	055-237-1226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053-813-3953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061-279-1225
전남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4-1964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	063-288-7770



부록

#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 보호아동의 원가정(가족) 만남을 위한 가이드

-



## 목 차

<b>I. 면접교섭의 이해</b> .....	<b>126</b>
1. 추진배경 .....	126
2. 면접교섭의 정의 .....	126
3. 면접교섭의 법적근거 .....	127
4. 추진체계 .....	127
5. 면접교섭의 원칙 .....	128
6. 면접교섭의 절차 .....	129
<b>II. 면접교섭의 서비스 제공 방법</b> .....	<b>132</b>
1. 서비스 대상 .....	132
2. 지원 기간 .....	132
3. 서비스 제공 방향 .....	133
4. 면접교섭 방법 .....	135
5. 면접교섭 결과보고 및 공유 .....	138
<b>III. 행정사항</b> .....	<b>139</b>
<b>[관련 서식]</b>	
서식 1. 개별 보호·관리 계획 .....	140
서식 2. 서비스제공 계획서 .....	145
서식 3.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	147
서식 4. 양육상황 점검표 .....	149
서식 5. 외출(외박) 신청서 .....	152



## I 면접교섭의 이해

### 1 추진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아동복지법 제4조)
- 그러나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저조로 가정의 보호기간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권리 저해 및 원가정(가족)이 존재함에도 정기적인 교류가 없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가정 복귀 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원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강화를 통해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 복귀 및 적응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 2 면접교섭의 정의

- 분리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지속적·규칙적 만남을 지원하는 것
  - 원가정이 없거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면접교섭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및 제11조의6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1. 12. 30.]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 12. 30.]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행일: 2021. 12. 30.]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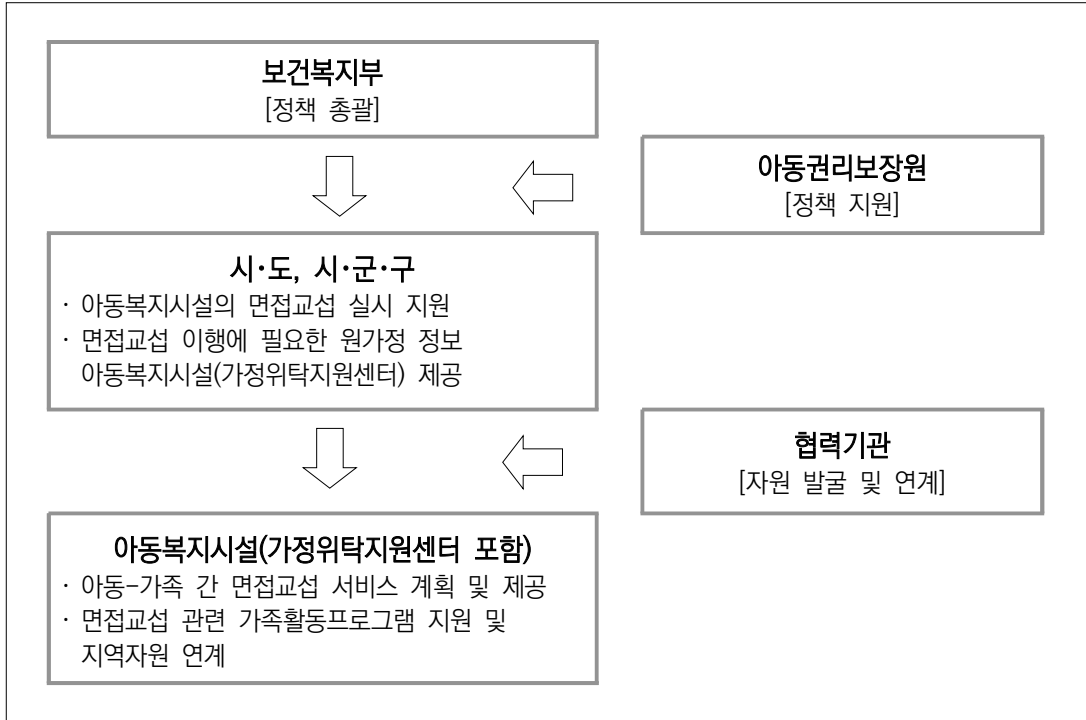
### 4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면접교섭 지원 법령 마련 등 정책 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면접교섭 지원 매뉴얼 마련 등 정책 지원
- 지자체(시·도, 시·군·구): 보호대상아동의 면접교섭 계획 수립,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 등
- 아동복지시설\*: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아동 및 가족 간 면접교섭 서비스 이행, 면접교섭 결과보고

\* 이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포함)에 적용

- 협력기관: 면접 프로그램 개발 등 면접교섭 서비스 관련 필요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그림> 추진체계



## 5 면접교섭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면접교섭을 계획할 때 아동의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면접교섭은 아동의 상실감 극복, 원가정 복귀 및 지지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요인임을 인식해야 함
- 아동의 권리 및 의사 존중
  - 아동은 가정외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과 면접할 권리가 있으며, 「민법」 제779조에 규정된 가족 내에서 아동이 면접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면접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함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면접교섭 진행 시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교섭 지원
  - 원가정(가족)과의 면접교섭 주기, 횟수, 장소, 면접 참석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면접을 지원해야 함
-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 면접교섭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및 협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여러 기관을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함

## 6 면접교섭의 절차

### 가. 면접교섭 지원계획 수립

- 1) 수행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
- 2) 수행시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작성 시
- 3) 수행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 보호를 의뢰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와 논의하여 아동과 원가정(가족)간의 「면접교섭 지원계획」 작성
  - ※ '21.12.30. 이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이 수립된 아동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시행되는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면접교섭 지원계획을 수립 후 변경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
- 4) 작성서식: 개별 보호·관리 계획[서식 1]

### 나.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1) 수행주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 2) 수행시기: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 ※ (가정위탁) 일반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 3) 수행방법: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지자체를 통해 공유받은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토대로 아동과 원가정(가족)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계획 수립
  - ※ '21.12.30. 이전 배치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개별 아동의 양육상황점검을 토대로 변경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공유받은 직후 수행시기에 맞춰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4) 작성서식: 서비스제공 계획서[서식 2]\*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사용중인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단, 「면접교섭 동의여부」, 「지원내용」, 「원가정 지원계획」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다. 면접교섭 이행

1) 수행주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2) 수행시기: 아동복지시설 배치 초기부터 원가정 복귀 또는 종결 시까지

3) 수행방법: 아동의 적응상태 및 원가정(가족) 상황 등에 따라 효과적인 면접교섭 방법으로 진행(12p. ‘아동의 적응단계별 서비스 제공 방향’ 참고)

※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해 제 3의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경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장소 제공 등 협조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이 요청하는 경우 면접교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면접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4) 작성서식: 외출(외박) 신청서[서식 5]\*

- 아동이 원가정(가족) 방문 또는 외출(외박)을 하는 경우 작성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사용중인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라. 면접교섭 결과보고

1) 수행주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2) 수행시기: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종료 직후\*

\*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계획된 정기적 면접 외 상시 면접의 경우 작성 제외 가능

3) 수행방법: 면접 참석자, 방법, 내용, 아동소감 및 작성자 의견 등을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서식 3]에 작성하여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상황 점검 시(분기별) 공유

※ 단, 면접교섭 중 아동의 안전을 침해하는 상황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면접교섭 결과를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즉시 공유

4) 작성서식: 면접교섭 결과보고서[서식 3]\*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사용중인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대체 활용 가능  
(※ 단, 「면접 대상자」, 「면접 방법」, 「면접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마.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

- 1) 수행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2) 수행시기: 양육상황점검 시(분기별)
- 3) 수행방법: ‘면접교섭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호·관리 계획 및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아동과 원가정(가족)과의 면접교섭 이행결과 모니터링
  -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는 보호아동의 원가정 사례관리 시 확인된 정보, 변화 등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이후 면접교섭 이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4) 작성서식: 양육상황 점검표[서식 4]

<표> 면접교섭 절차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가족) 간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별 보호·관리 계획’ 에 포함</li> </ul> </li> <li>• 면접교섭 이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 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 모니터링</li> </ul> </li> </ul>	<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실시</li> </ul> </li> <li>• 면접교섭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이행 후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양육상황 점검 시 공유</li> </ul> </li> </ul>

## II 면접교섭의 서비스 제공 방법

### 1 서비스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의해 분리보호조치된 아동
  - '21.12.30. 이전에 보호조치된 아동도 포함하며 원가정(가족)과의 장기적인 연락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면접교섭 이행이 불가능한 아동은 제외 가능
  - ※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가족에 의해 기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일반위탁가정(친인척))의 경우에도 친부모 생존 시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
  - ※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아동)은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표> 면접교섭지원 대상

구분	보호조치 근거 조항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52조
보호조치 결정주체	시·도 또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사법기관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면접교섭 지원대상	해당	제외

- ※ 단,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52조에 의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 2 지원 기간

- 면접교섭은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시점부터 계획되어야 하며 원가정 복귀 또는 종결(연령도래 종결 포함) 시까지 지속

### 3 서비스 제공 방향

#### 가. 아동 특성별 서비스 제공 방향

지자체(아동보호전담요원)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아동의 보호예상 기간, 보호유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1) 단기간 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원가정의 아동 양육의지가 강하지만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비학대)으로 아동 보호를 의뢰 하는 등 단기간 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경우 아동과 원가정 간 높은 빈도의 면접교섭 진행

##### 2)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 원가정 복귀가 힘들며 친부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면접교섭이 어려운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 유지해 주는 형태의 주기적 면접교섭 진행

##### 3) 고위험 아동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한 이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 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면접교섭 이행 여부 재평가 필요

<표> 유형별 면접교섭 제공 방향

유형	면접교섭 제공 방향
단기	- 높은 빈도의 면접교섭 진행을 통해 조속한 원가정 복귀 지원
장기	-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과 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고위험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 나. 아동의 적응단계별 서비스 제공 방향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은 보호아동에 대한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시 아동의 적응상태, 아동 및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면접대상자·주기·방법 등 세부 계획 수립

### 1) 배치 초기

배치 초기 및 적응단계에는 원가정(가족)과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담당자, 원가정(가족), 아동이 함께 만나는 형태로 추진하되 아동과 가장 가까운 연고자를 우선으로 면접교섭 실시

※ 소규모시설(아동그룹홈 등)의 경우 시설 내 면접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면접 진행

### 2) 적응기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시설(센터) 담당자가 동석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평가될 경우 시설 내에서 담당자 없이 아동과 가족이 만나거나, 원가정 방문, 외출(외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위탁가정과 원가정(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위탁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없이 위탁가정과 원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면접교섭 수행 가능(단, 위탁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 담당자가 아동을 인도하여 면접 진행)

※ 아동의 원가정 방문은 반나절→하루→1박 2일 등 순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며 방문 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평소 일과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

### 3) 원가정 복귀 준비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가족)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경험하는 방향으로 지원

※ 원가정(가족)이 아동의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옷 사주기 등을 직접 해보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으로 경험하도록 함(위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과 사전에 협조하여 진행)



**Tip** 면접교섭 이행 전 고려사항

지자체 및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는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전 원가정(가족)이 가진 문제에 대해 예측 및 대비

## ① 원가정(가족)의 정서적 문제 파악

원가정(가족)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죄책감 또는 시설(센터) 담당자에게 느끼는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만남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설(센터) 담당자는 원가정(가족)이 만남을 회피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 ② 원가정(가족)의 양육기술 교육

양육경험의 부족으로 아동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또는 아동이 시설(센터)담당자 또는 위탁부모에게만 반응할 때 느끼는 부러운 감정 때문에 만남을 주저하는 경우 양육기술에 대해 원가정(가족)에게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

## ③ 원가정(가족)의 돌발행동 대비

원가정(가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을 만나러 오거나, 약속을 하지 않고 보호시설(위탁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조 요청 필요

※ 술에 취한 상태로 아동을 만나러오거나, 약속된 시간 이외에 방문 또는 약속 시간보다 지나치게 늦을 시 면접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 활용 등

※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면접을 제한할 수 있음(단, 아동의 보호 시설 또는 위탁가정 적응을 돕기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 4 면접교섭 방법

## 가. 비대면 면접

## 1)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 ① 목적 및 목표

- 원가정(가족)과의 관계 유지 및 교류
- 다양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서로의 근황 확인

## ② 내용 및 방법

- 정기적으로 영상통화, SNS, 문자,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아동과 원가정(가족)간의 연락 체계 유지

※ 가정위탁 또는 소규모시설(그룹홈)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고려

**Tip 원가정(가족)이 수감된 경우**

연령이 낮은 아동이 원가정(가족)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정신병원에 가는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함. 아동의 연령이 어려 직접 편지나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아동에 관한 소식을 원가정(가족)에게 전해주고, 원가정(가족)이 아동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

**나. 대면 면접**

## 1)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내방

## ① 목적 및 목표

- 안전한 장소에서 아동이 원가정(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함
- 보호기간 동안 아동양육에 대한 원가정(가족)과 종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아동양육 파트너십 형성

## ② 내용 및 방법

- 원가정(가족)의 내방 전 아동 특성에 따른 사전준비와 교육을 실시
  - ※ 내방 전 원가정(가족)과 보호시설 양육자가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평소 일과 등을 공유하고 합의
- 원가정(가족)과 아동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된 장소 마련
  - ※ 원가정(가족)의 돌발행동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동석하여 면접 진행
  - ※ 소규모시설(아동그룹홈 등)의 경우 시설 내 면접장소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면접 진행
- 필요시 원가정(가족)이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책, 게임, 간식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

## 2) 원가정(가족) 방문 또는 외출(외박)

## ① 목적 및 목표

- 아동이 원가정(가족)을 방문하거나 외출(외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함

## ② 내용 및 방법

- 방문 또는 외출(외박)을 하기 전에는 원가정(가족)과 논의하여 방문기간 동안 해야할 일, 함께 할 일 등에 대해 미리 계획
  - ※ 원가정(가족)이 아동의 학교 행사, 병원 진료, 옷사주기 등을 직접 해보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으로 경험하도록 함(위탁아동의 경우 위탁가정과 사전에 협조하여 진행)
- 원가정(가족) 방문 또는 외출(외박) 시에는 ‘외출(외박) 신청서’[서식 5]를 작성 및 제출

- 아동이 시설(위탁가정)로 돌아오면, 아동의 소감을 확인하여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서식 3] 작성 및 다음 면접 계획 수립에 활용
- 아동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이나 주말, 명절, 방학 등의 기간을 활용
  - ※ 단, 특별한 경우(예: 원가정(가족)의 입원 등)를 제외하고 원가정(가족)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해 제 3의 장소에서 면접하는 것으로 시작함
  - ※ 아동의 원가정(가족) 방문은 반나절, 하루, 1박 2일 등의 순서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함
  - ※ 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규칙적인 일과에 대해 아동과 원가정(가족)이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설(센터) 담당자가 계획과정을 지원하도록 함
  - ※ 원가정(가족)이 데리러 올 수 없거나,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 등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설(센터) 담당자, 아동보호전문요원 등 성인이 아동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 3) 제 3의 장소(외부 장소)에서의 만남

#### ① 목적 및 목표

-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에 따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함
  - ※ 학대가해자 외 가족과 면접하는 경우에도 면접자를 통해 학대가해자에게 아동 주소지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학대피해아동은 초기 면접 시 반드시 외부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함

#### ② 내용 및 방법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장소 제공 등의 협조 요청
- 아동의 안전한 하차 및 픽업 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 4) 가족활동프로그램

#### ① 목적 및 목표

-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안전한 놀이 및 상담 환경에서 아동-부모가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킴
- 원가정(가족)과 아동 간의 갈등 감정을 감소시키고, 공감 기술을 향상시킴

#### ② 내용 및 방법

- 아동(심리치료 및 놀이지원 등)과 원가정(양육기술교육, 상황대처기술 등) 대상 교육 및 가족활동 등을 지원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단위 활동(가족캠프 등)에 참여 또는 협력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진행 가능
  - ※ 상황이 가능할 시 원가정 복귀 후 같이 살게 될 가족 전체가 참여하도록 함

## 5 면접교섭 결과보고 및 공유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는 면접교섭 이행 후 그 결과를 면접교섭 결과보고서[서식 3] 작성을 통해 평가하고 다음 면접 계획 수립에 활용
  - ※ 아동과 원가정(가족) 간 행동 및 심리상태를 면밀히 관찰 및 평가하여 이후 면접교섭 계획에 반영
  - ※ 비대면 면접의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월지(결과보고서)'[서식 3의 1호] 작성
  - ※ 단, 위탁아동이 동일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예: 월 3회 이상)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여러 이행건의 결과를 한 건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음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 점검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양육상황 점검표[서식 4]에 기록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원가정의 상황 및 변화에 대해 공유하여 이후 면접교섭 서비스계획 변경 및 보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Tip** 면접교섭 이행결과 점검 시 고려할 사항

- 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원가정(가족)이 아동을 만날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약속을 하고 오지 않는 등 아동을 실망시키는 경우에도 담당자가 아동과 원가정(가족)과의 면접에 대한 회의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원가정(가족)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강점관점 기반으로 찾기 위한 노력 필요
- ② 원가정(가족)  
아동이 원가정(가족)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원가정(가족)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동기나 자신감이 약화될 수 있음. 이 경우, 아동은 가족과 함께 살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아동의 원가정(가족)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동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원가정(가족)에게 인식시켜야 함
- ③ 아동  
원가정(가족)과의 만남 후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님. 원가정(가족)에 대한 애착 및 양가감정일 수 있으며 이는 원가정 복귀에 필요한 준비 과정임을 담당자는 인식해야 함
- ④ 위탁가정  
위탁부모는 원가정(가족)과의 만남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 특히, 원가정(가족)이 면접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위탁부모가 원가정(가족)을 비난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위안과 지지를 통해 실망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함. 또한, 아동이 원가정(가족)과의 만남 이후 보이는 행동 변화 등을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과 공유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함

### III 행정사항

가. 면접교섭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시행일 기준으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다만, 기보호 중인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 계획(아동보호전담요원) 및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아동복지시설)은 2023년 1분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각 시·도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반기까지는 월별로,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제출
- 제출시기 : 매월말 기준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작성양식

(기준 : 매월말, 단위 : 아동수)

구분	보호유형		아동현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서비스 제공계획		면접교섭 실시여부								
			전체 아동 수	면접대상 아동수	면접 미대상 아동 수	수립	미수립	수립	미수립	실시	비대면	대면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시도명	기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신규보호	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가정위탁																
		소계																
	계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유기, 미아, 법적 처분 및 학대고위험군, 기타

서식 1 개별 보호·관리 계획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중복 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혼부모·혼외자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비행·부랑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빈곤·실직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input type="checkbox"/> 신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원 불명				182신고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아동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보호자 (원가정)	관계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부부중심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미혼모부가구 <input type="checkbox"/> 공동체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장애탈주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보호계획	<b>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b>			
	<input type="checkbox"/> 상담·지도(1호) <input type="checkbox"/>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2호)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3호)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4호) <input type="checkbox"/>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 <input type="checkbox"/> 입양(6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호조치 일자	년 월 일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기관(시설)종류:
아동 서비스 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내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가능 (대면 불가)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분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반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면접교섭 주기			
지원내용				
원가정 점검 계획	(원)가정복귀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원가정복귀 불가능 사유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입양대상아동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가정 지원방법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연계 <input type="checkbox"/> 금품지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내용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 보호유형 변경, 위탁가정 변경, 타 시·군·구 사례이관 시 보호계획 변경
작성목적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아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같음 -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예)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빈번한 입원, 치료, 알레르기, 지속적 약복용, 아토피,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 불가,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 - 아동복지법 개정('21.12.30.)으로 이전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 보호대상아동은 차기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면접교섭지원계획을 수립 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변경
활용방법	- 원가정의 보호기관 서비스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종료(원가정 복귀)시점까지
기타	- 개별보호·관리계획(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항목	작성내용	
아동, 보호자, 가구유형, 가족관계, 욕구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li> <li>-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li> <li>-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록</li> <li>- 보호자는 부모,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임(민법777조)</li> <li>- 욕구조사에서 가족사항이 조사되면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반영되며, 면접 동의여부 확인 후 별도 체크</li> </ul>	
보호계획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 후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li> <li>※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제외</li> </ul>
	가정위탁, 아동 복지시설, 전문 치료·요양원,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대상</li> <li>※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아동보호팀에 이관하지 않으며, 시스템 에서는 심의결과까지 입력 후 종결)</li> </ul>
	보호조치일자, 보호의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입소 날짜 등, 해당 원가정의 보호기관명 및 시설종류 기재 예) 기관(시설)명: 하늘 천사원 기관(시설)종류: 양육시설</li> </ul>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li> <li>-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 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li> <li>※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에 2021년 건강검진 사업 안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계획 등</li> </ul>	
면접교섭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li> <li>※ 면접교섭이 가능한 가족범위(민법 779조):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li> <li>※ 면접교섭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의뢰 사유에서 보호자 수감, 보호자 질병 및 아동이 영아인 경우 등에 한하여 비대면가능(대면불가)</li> <li>- 면접교섭지원계획은 가족관계에서 면접교섭가능여부 확인 후 해당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 확보</li> </ul>	

항목	작성내용
	※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52조에 의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면접주기	- 면접교섭 대상자의 면접주기 체크
지원내용	- 지원내용 등 작성 예) 격월 1회 외조모댁에 가정방문(외출) 필요 월 1회(첫째주 금요일) 친모집에 외박(1박) 필요
원가정 지원 (복귀) 계획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 예)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입양아동의 경우 작성 제외
원가정 점검 계획	원가정복귀 가능여부 - 보호자(원가정)를 원가정점검 대상으로 보며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함 원가정지원방법 -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체크 지원내용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 예시: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담당자 의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보호계획 의견 정리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서식 2 서비스제공 계획서

〈신설〉

서비스제공 계획서

사례(관리)번호						
아동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아동 상황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아동 서비스 계획	욕구영역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담당자)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면접교섭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가능(대면 불가)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수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질병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분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반기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연 1회 이상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미아 <input type="checkbox"/>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원내용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작성)				
원가정 지원계획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등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기	-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 일반위탁(친인척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맞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작성방법	- 아동의 가족관계, 아동 상황, 아동 서비스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원가정 지원 계획,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등의 점검 근거로 활용
기타	- 개별 보호·관리 계획 변경 시 현행화

항목		작성내용
가족관계		- 개별 보호·관리 계획 「가족관계」를 참고하여 작성 및 면접교섭동의여부 체크
아동의 상황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 개별 보호·관리 계획 「담당자 의견」 및 아동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관한 사항) 아동은 ADHD약을 복용중이며,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조절이 힘들고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동을 보임 /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초등 고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기 정체성 정립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 연계가 필요함. 또한, 친가정에 대한 애착이 높아 친부모와 자주 연락하기를 희망함
아동 서비스 계획	육구영역,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담당자)	- 개별 보호·관리 계획 「육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육구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보호종인 시설명) 작성
면접교섭 가능여부		-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시 반드시 사유 확인)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지원내용	- 아동이 면접 대상자와 진행할 면접 방법, 주기 등 작성 (※ 양육상황 점검 시기에 맞춰 필요시 변경 및 보완) · 아동복지시설: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작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예) 친모와 월 1회 대면 면접 시행 예정. 또한, 외조모와도 격월 대면 면접을 진행할 예정. 3개월 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담당자가 참석하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관계 변화정도에 따라 외출, 외박 등 면접을 지원 ※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주소지 노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작성 예) 원가정(가족) 소재지 시군구청에 장소 협조 요청 등

서식 3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신설〉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관리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아동 정보	아동명, 생년월일																
면접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친부	<input type="checkbox"/> 친모	<input type="checkbox"/> 양부	<input type="checkbox"/> 양모	<input type="checkbox"/> 계부	<input type="checkbox"/> 계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자매	<input type="checkbox"/> 친조부	<input type="checkbox"/> 친조모	<input type="checkbox"/> 외조부	<input type="checkbox"/> 외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명)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아동복지시설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면접 개요	면접날짜	yy.mm.dd ~yy.mm.dd	시작시간	00:00	종료시간	00:00	장소	면접 방법									
								<input type="checkbox"/> (대면) <input type="checkbox"/> 시설(센터) 내방 <input type="checkbox"/> 외출(원가정 방문/무박) <input type="checkbox"/> 외박(원가정 방문/1박 이상) <input type="checkbox"/> 제 3의 장소 만남 <input type="checkbox"/> 가족활동프로그램 참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input type="checkbox"/> 영상통화 <input type="checkbox"/> 음성통화 <input type="checkbox"/> 문자(SNS 포함) <input type="checkbox"/> 서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면접 내용																	
면접 사유	정기 면접, 기념일, 학교행사 등																
취소 또는 중단 사유	해당 시 작성																
아동 소감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작성자 의견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면접 시 분위기, 아동과 면접 대상자 간 상호작용 등)																

● 작성방법

작성 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 기	-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작성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계획된 정기적 면접 이행 직후
작성목적	- 면접교섭 내용 평가 및 다음 면접 계획 수립
작성방법	- 면접 대상자, 면접 개요, 면접 내용, 면접 사유,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아동 소감, 작성자 의견, 다음 면접 계획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양육상황 점검 시 면접 이행 여부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타	- 면접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

항목		작성내용
아동정보		- 아동명, 생년월일 작성
면접 대상자		-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참석자 체크 및 성명 작성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작성
면접 개요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방법	-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작성 및 면접 방법 체크 ※ 비대면 면접의 경우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생략 가능
면접 내용		- 아동과 원가정이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한 일 등에 대해 작성 예) 아동 유치원 행사에 친모, 외조모가 참관 후 함께 저녁 식사/아동의 사진 등을 담은 서신을 친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전달 / 입원중인 친모에게 영상통화로 아동이 생활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
면접 사유		- 정기적 만남(면접), 기념일(생일), 입학식/졸업식 등 사유 작성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계획된 면접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작성(연락없이 만남을 취소, 술에 취해있어 중단, 교통문제,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취소, 면접 대상자 병세 악화로 통화 불가 등)
아동 소감		-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영아의 경우 아동 소감 생략 가능
작성자 의견		-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정서안정, 즐거운 감정 표현, 자신감 회복, 정체성 확립, 양가강점, 퇴행, 화내기, 우울감표출 등) 작성

서식 4 양육상황 점검표

양육상황 점검표

점 검 일	년 월 일 ( 차 )		관리번호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년	월 일	
아동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년	월	일	
	보호조치 (아동복지법15조)	보호기관				
	보호조치일	년 월 일	보호기관 담당자			
개별보호· 관리계획점검	육구영역	목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육구점검 및 평가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단기	장기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				
면접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대면) <input type="checkbox"/> 이행 총 ( )회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비대면)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 <input type="checkbox"/> 면접교섭 이행불가	
	이행 내용	※면접교섭 미이행 사유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병리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직장문제(근로) <input type="checkbox"/> 금전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교섭주기 미도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정기면접, 기념일 축하 등〉				
원가정점검	원가정 점검 여부	<input type="checkbox"/> 점검 <input type="checkbox"/> 미점검			※ <input type="checkbox"/> 원가정점검 불가	
	점검 방법	※원가정 미점검 사유 <input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type="checkbox"/> 병리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직장문제(근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지원 내용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방문( )회 <input type="checkbox"/> 내방( )회 <input type="checkbox"/> 유선( )회 <input type="checkbox"/> 외부( )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총( )회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담 <input type="checkbox"/> 사례관리 연계 <input type="checkbox"/> 금품지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가정 지원계획 대비 작성〉				
점검 후 조치계획	[ ] 현 보호 유지( ) [ ] 보호계획 변경( ) [ ] 보호조치 변경( ) [ ] 보호종결([ ]연령도래 [ ] 원가정 복귀 [ ] 기타( ))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아동 분리 보호조치 1차(1개월 이내) 이후 3개월 주기로 실시 - 보호 중 아동의 다른 욕구 발생 시(서비스 변경)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거나 보호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의 제공서비스 및 아동 변화 정도 점검 - 원가정 점검을 통한 가정복귀 시점, 가족 변화 정도 파악
작성방법	- 아동, 친부모(보호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상담(유선, 대면 등)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항목 기록 -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여부 등 ※ 필요시 아동, 친부모 상황점검표 활용 - 면접교섭 이행점검은 면접교섭결과보고서(원가정보보호기관 수행)를 바탕으로 점검 - 원가정 점검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가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결과 등
활용방법	- 보호계획 변경, 원가정 복귀 계획 수립, 보호종결 등

항목		작성내용
점검일		- 아동을 보호조치이후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날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아동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보호조치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의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호~6호 해당)조치사항
	보호기관	- 아동이 보호되는 기관명 예) 00가정위탁지원센터, 00보육원
	보호조치일	- 시설입소 날짜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아동 담당자(상담원, 생활복지사) 성명 기재



항목		작성내용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적응상태, 변화정도, 구성원과의 관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등을 기재 (아동의 실제 욕구 등 파악)</li> <li>-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등</li> </ul>
면접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관계자가 작성한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접 이행여부, 횟수 체크 ※ 면접교섭계획이 있으나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 사유 체크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면접교섭 가능여부에서 불가능으로 체크한 경우 면접교섭 이행불가에 체크</li> </ul>
	이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이행 내용(대상, 방법) 작성 예) 친모가 아동 생일을 맞이하여 외박(1박, 3월5일)</li> <li>- 아동면접 결과(아동소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및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재</li> </ul>
원가정점검	원가정 점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점검 이행여부 체크</li> <li>- 미점검 시 미점검 사유 체크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불가능한 경우 원가정점검불가에 체크</li> </ul>
	점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방문, 내방 유선, 외부 기타 등 각각의 횟수를 기록하고 최종 횟수 기록</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의 달성 정도 및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기재</li> </ul>
점검 후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후 종합적인 양육상황 결과 기재</li> <li>① 현 보호 유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경우</li> <li>② 보호계획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 해당 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계획 변경 실시(시군구 사례회의(내부회의)를 통해 결정(사례결정위원회 심의제외가능)</li> <li>③ 보호조치 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아동이 현 보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변경 실시(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해야함)</li> <li>④ 보호조치 종결: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거나 연령도래로 종결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종결함)</li> </ul>

## 외출(외박) 신청서

1. 본인은 아동과 외출(외박) 후 아동을 기관에 귀가조치 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2.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함께 결정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약속사항:  
*(예시: 아동을 체벌하지 않는다. 학교에 지각시키지 않는다. 용돈은 ~원까지 허용한다. ~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을 사주지 않는다 등)*
3. 본인은 약속한 외출(외박)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하겠습니다.
4. 아동과의 외출(외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로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5. 신청 정보
  - 신청자 이름:
  - 신청자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 아동이 머물 곳:
  - 외출(외박) 기간: 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외출(외박)을 요청합니다.

신청자: 000 (서명)

담당자: 000 (서명)



서식모음

### Ⅲ. 가정위탁 보호

1

가정위탁 보호

〈서식 1호〉 위탁부모 추천서 .....	155
〈서식 2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156
〈서식 2의 1호〉 소재불명조사복명서 .....	157
〈서식 3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158
〈서식 3의 1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159
〈서식 4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
〈서식 5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	161
〈서식 5의1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162
〈서식 6호〉 가정위탁보호 현황 .....	163
〈서식 7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	164
〈서식 8호〉 보험사 선정 및 보험가입 자료 .....	168
〈서식 9호〉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	168
〈서식 10호〉 보험금 수령 및 지급 관리대장 .....	168
〈서식 11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	169
〈서식 12호〉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	169
〈서식 13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추천서 .....	170
〈서식 14호〉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 .....	171
〈서식 15호〉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	172
〈서식 16호〉 아동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	173
〈서식 17호〉 심리치료 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 .....	174
〈서식 18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내역 .....	175



〈서식 2호〉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1. 위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위탁유형 :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일시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 15조에 의하여 아동 (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2의 1호〉

### 소재불명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성명)		
3.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친권자와 연락이 닿은 지 2주 이상 경과 여부</li> <li>• 주소지 방문 및 개인 전화·직장 통한 연락에 무응답 여부</li> <li>• 기타 접촉 조치사항 아래 기재</li> </ul>		
4. 조사결과			
5. 조사자	직급	성명	

본인은 아동 ( )의 친권자의 소재불명 사실 및 친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상기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호〉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서식 3의 1호〉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연 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식 4호>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대상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변경 주소	
대상시설 (위탁부모)	연락처	
	시설명(이름)	
	주소	
	연락처	
연장신청 정보	보호 연장기간	[ ] 만 24세까지 연장(별도 사유 불필요) [ ]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보호 연장사유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시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연장기간 거주 예정지	[ ] 시설(위탁가정) 내 거주 [ ] 시설(위탁가정) 외 거주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5호>

### 가정위탁보호 (변경)사항 통보

시·군·구

일련 번호	위탁보호 (변경) 사유	위탁 보호 결정일	위탁 유형	변경일	위탁아동			위탁(부)모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 번호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Y, N)	성명	주민 번호	

- \* 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 \* 변경유형 : 위탁결정(신규), 위탁결정(재위탁), 위탁종결(해지)
- \* 위탁부(모) : 위탁아동을 부양할 위탁부(모) 1인
-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Y), 수급자아님(N)

〈서식 5의1호〉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아동(가정)방문 <input type="checkbox"/> 시설·기관 내방 <input type="checkbox"/> e-mail(사이버)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사후관리 주기	<input type="checkbox"/> 년 1회 <input type="checkbox"/> 6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3개월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p>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1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 자료로 보관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연령도달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5년,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1년간 사후관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p> <p>*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p>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p>해당 아동은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p> <p>또한 아동은 퇴소 후 자립수준평가(자립상태점검)에 응하고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p>			
비고	<p>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p>			
동의확인	<p>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권자 :                      (서명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획득자 :                      (서명또는 인)</p>			



<서식 7호>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 각 년도 누계(4/4분기 : 연간실적)

\* 엑셀파일로 작성

가정위탁지원센터

### 1. 가정위탁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합 계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일시위탁가정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전체위탁현황									
신 규	( )/4분기								
	연누계								
종 결	( )/4분기								
	연누계								
연 장	( )/4분기								
	연누계								
연장 종결	( )/4분기								
	연누계								

### 2. 위탁아동 연령별 및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영아)	(유아)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
전체 위탁 현황	계							
	남							
	여							
( )/4 분기	계							
	남							



6. 보호연장 종결사유 현황

구분	계	원가정 복귀	취업	대학교 졸업	휴학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학원교육		연장보호 가능기간 종료		결혼	전출 미책정	사례 이관	일시 중지	기타	
						종료	중도 탈락	연령 도달	중도 탈락	낮은지능 지수· 질병·장애**	취업 준비 등***						
( )/4분기																	
연누계																	

<b>비 고</b>	
------------	--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써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보호기간 연장가능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 p.49)

\*\*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가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7. 가정위탁 종결 후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가정 복귀	양육시설 입소	일시보호시 설입소	그룹홈 입소	소년소녀 가정세대 책정	입양	자립	위탁 가정 변경	사례 이관	기타
( )/4 분기											
연누계											

<b>비 고</b>	
------------	--

8. 사례관리(재정)현황

구 분	양육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원가정지원금	센터지원금	정기후원금
( )/4 분기	명	명	회	회	회
			천원	천원	천원



9. 가정위탁 서비스제공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서 비 스 내 용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일반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전문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일시위탁부모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원가정에 대한 서비스	(회)	(명)	(회)	(명)	
기타 서비스	(회)	(명)	(회)	(명)	
합 계	(회)	(명)	(회)	(명)	

※ 멘토링, 문화체험행사, 캠프, 자원봉사 결연, 심리검사 등 센터 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현황

10. 가정위탁 교육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 계		교 육 내 용
일반, 일시위탁부모	양성교육	(회) (명)	(회) (명)		
	보수교육	(회) (명)	(회) (명)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회) (명)	(회) (명)		
	보수교육	(회) (명)	(회) (명)		
공무원	(회) (명)	(회) (명)			
기타(자원봉사자 등)	(회) (명)	(회) (명)			
합 계	(회) (명)	(회) (명)			

11. 가정위탁 홍보사업 현황

구 분	( )/4 분기	누계	홍보내용	홍보대상	
홍보물	리플렛	(장)	(장)		
	포스터	(장)	(장)		
	전단	(장)	(장)		
	소식지	(부)	(부)		
	기타 홍보물	(개)	(개)		
언 론	방송(TV)	(회)	(회)		
	방송(라디오)	(회)	(회)		
	신문	(회)	(회)		
	잡지	(회)	(회)		
	생활정보지	(회)	(회)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회)	(회)		
	웹진	(회)	(회)		
	SNS 등 온라인 홍보	(회)	(회)		
홍보행사	캠페인	(회)	(회)		

※ 홈페이지는 등록된 게시물 수



<서식 11호>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현황

시·도

(단위 : 명, 천원)

보험 계약자	보험 수익자	보험사	보험 계약일	보험계약 인원(명)		위탁아동 1인당 보험료	보험료 지급(예정) 금액
				위탁아동	부양자 1인		

\* 보험계약서(청약서), 계약약관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서식 12호>

###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상(하)반기 시·도(시·군·구)

\* 하반기는 연간실적 제출(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명, 천원)

담보내용	보험금 지급인원	보험금 지급액
계		
위탁아동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위로금		
얼굴성형		
일상생활배상책임		

<서식 13호>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추천서

추천자			
기관명 (지역)		작성일	
담당자 (직위)		접수일	

심리치료 지원 아동				
성명		출생연월일 (연령)	년 월 일 (세)	
문제유형				
위탁(입양)사항	기간	년 개월	위탁형태	일반/전문/일시
부모협조 (치료참여가능여부)	입양부모	성명 (서명)	위탁부모	성명 (서명)
기타특이사항 <sup>8)</sup>				
담당자 추천사유 <sup>9)</sup>				
별도첨부서류				
희망치료기관				
치료 동의	위 아동의 치료를 동의합니다. 성명 : (인)			

※ [서식 13호]는 시·군·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도로 제출하는 서류임

8) 아동의 심리치료 경험 등

9) 센터 추천 아동의 경우 작성, 아동의 문제상황 및 심리상태, 부모와의 관계, 상담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서식 14호〉

### 아동 심리치료비 청구서

센터 및 기관명	(대표자 성명: )
심리치료 담당자	
치료기간(심리검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치료회기(심리검사 항목)	치료 회
이 름	
총 청구 금액	
<p>다음과 같이 금액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 [서식 14호]는 아동치료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하는 서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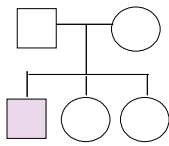
<서식 15호>

##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심리치료 Case No.		센터 및 기관명	
이 름		성 별	
생 년 월 일		검 사 일	

의뢰 사유 :

가족사항 :



부 - M/ 세/ 직업관  
 모 - F/ 세/  
 본인 - M/ 세/ 초등학교  
 동생 - F/ 세/  
 동생 - F/ 세/

실시검사 :

수 검 태 도

검 사 결 과

○ 기타사항

첨부서류 <sup>10)</sup>	
비 고 <sup>11)</sup>	

전문가 자격번호 및 이름

10) 진단서 및 영수증 관련 첨부문서 사항 기재

11) 관련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기재

〈서식 16호〉

## 아동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심리치료 Case No.		소속 및 기관명	
지 역		보고서 작성일	
이 름		심리치료 담당자	

### 심리치료 총괄사례보고서 샘플

#### I. 서론

#### II. 사례개요

1. 인적사항
2. 치료사유
3. 가족력
4. 양육사

#### III. 치료진행과정

1. 치료절차
2. 정보수집 및 사례형성 과정
3. 치료목표 및 중재방법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4. 치료과정 및 분석

#### IV. 고찰

1. 회기별 치료과정에서의 변화

#### V. 결론

<서식 17호>

### 심리치료 지원사업 교통비 청구서

아 동 명	
심리치료 기관명	
심리치료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치료회기(심리검사 항목)	치료 회
청구 금액	<input type="checkbox"/> 시내버스(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시외버스(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지 하 철(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기   차(출발지:           → 도착지:           )=           원 <input type="checkbox"/> 택   시(출발지:           → 도착지:           )=           원  <div style="text-align: right;">합   계=           원</div>
위와 같이 금액을 청구합니다.	

<영수증 첨부>



